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용역 최종보고서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법령개선방향
검토 연구

2023. 6.

제 출 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귀중

본 보고서를 귀 기관에서 의뢰하고 발주한 **부산 금융중심
지 발전을 위한 법령개선방향 검토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2023. 6

은행법학회

<연구진>

책임연구자: 정대 교수(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공동연구자: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노태석 전문위원(법무법인 태평양)

김명아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Executive Summary

- I. 서론
- II. 금융중심지법상의 추진위원회 및 추진조직
- III. 소규모 금융회사 등의 유치를 위한 금융중심지 등록 위
탁방안 검토
- IV. 금융중심지 관련 특례 법제의 체계화 방안
- V. 결론

목 차

I. 서론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13
II. 금융중심지법상의 추진위원회 및 추진조직	17
1.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현황	17
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권한 역할	17
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심의사항	25
2.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한계 및 문제점	28
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지위적 한계	28
3. 금융중심지 추진 관련 해외사례	33
가. 두바이	33
나. 싱가포르	34
4.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 방안	36
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지위 격상	36
나.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관할 시·도의 권한 확대	41
III. 소규모 금융회사 등의 유치를 위한 금융중심지 등록 위탁방안 검토	47
1. 전제 고려사항	47
2. 현황 및 문제점	47
3. 해외 사례 분석	51
가. 두바이	51
나. 싱가포르	53
4. 소규모 금융회사 등록의 금융중심지 위탁방안	63
IV. 금융중심지 관련 특례 법제의 체계화 방안	71
1. 현황 및 문제점	71
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와 입법 현황	71

나. 현행 입법의 문제점과 한계	71
다. (부산)금융중심지 및 부산지역 특구법제의 주요 내용 비교	73
2.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관련 검토	78
가. 현행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78
나.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국회 입법안 처리 현황	80
다. 시사점	85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관련 검토	86
가. 2018년 전부개정 법률[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52호, 2018. 10. 16., 전부개정] ..	86
나. 2021년 개정 법률[시행 2021. 7. 21.] [법률 제18102호, 2021. 4. 20., 일부개정]	90
다. 시사점	91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련 검토	93
가.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93
나. 현행 법제의 문제점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의 국회 제출 현황	97
다. 시사점	98
5. 소결	99
V. 결론	133
참고문헌	137

표 목차

〈표 II-1〉 금융허브추진위원회 분과별 검토과제	22
〈표 II-2〉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 요건	23
〈표 II-3〉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원(2020년)	24
〈표 II-4〉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	25
〈표 II-5〉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심의사항	25
〈표 II-6〉 기본계획 포함사항	27
〈표 II-7〉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 변화	28
〈표 II-8〉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 변화	30
〈표 II-9〉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 변화	32
〈표 II-10〉 DIFC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제공된 인센티브	34
〈표 II-11〉 금융중심지법 제6조 개정안(예시)	37
〈표 II-12〉 금융중심지법 제10조제2항 개정안(예시)	38
〈표 II-13〉 규제샌드박스형 모델 개정안	42
〈표 II-14〉 특별지역 지정 모델 개정안	44
〈표 III-1〉 SGX 산하 증권거래소 현황	54
〈표 III-2〉 싱가포르 예금취급기관 유형	56
〈표 IV-1〉 (부산)금융중심지 및 부산지역 특구법 간 비교	75
〈표 IV-2〉 지엔그룹 국제금융센터지수평가(GFCI)의 국제금융중심지 도시별 지수	79



그림 목차

<그림 I-1> 2008년 「부산 금융중심지 개발 계획」상의 금융중심지 부산의 비전	3
<그림 I-2> 글로벌 선박금융시장 규모의 흐름	4
<그림 I-3> 지역에 따른 글로벌 선박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5
<그림 I-4> 상위 40개 대형은행의 선박금융 포트폴리오의 변화	5
<그림 I-5> 2014-2019 국내 선박금융 추정 규모	6
<그림 I-6> 2014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의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	7
<그림 I-7> 디지털 경제확산과 금융산업 구조변화	9
<그림 I-8> 금융서비스의 기능별 분화	10
<그림 I-9> 정부의 규제특구 지정의 현황과 효과	12
<그림 I-10> 싱가포르 법원 판결 사건 : Bored Ape Yacht Club(BAYC N0.2162)	12
<그림 II-1> 금융허브추진위원회 구성	20
<그림 III-1> 싱가포르 금융자문업 인가업체 현황	57
<그림 III-2> 싱가포르 핀테크 환경	60
<그림 III-3> 샌드박스 참여시 법·규제 요건 완화/유지 예시	61
<그림 III-4>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주요 기능	64
<그림 III-5>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자체 운영프로그램	64
<그림 III-6>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디지털 금융혁신지원 업무	65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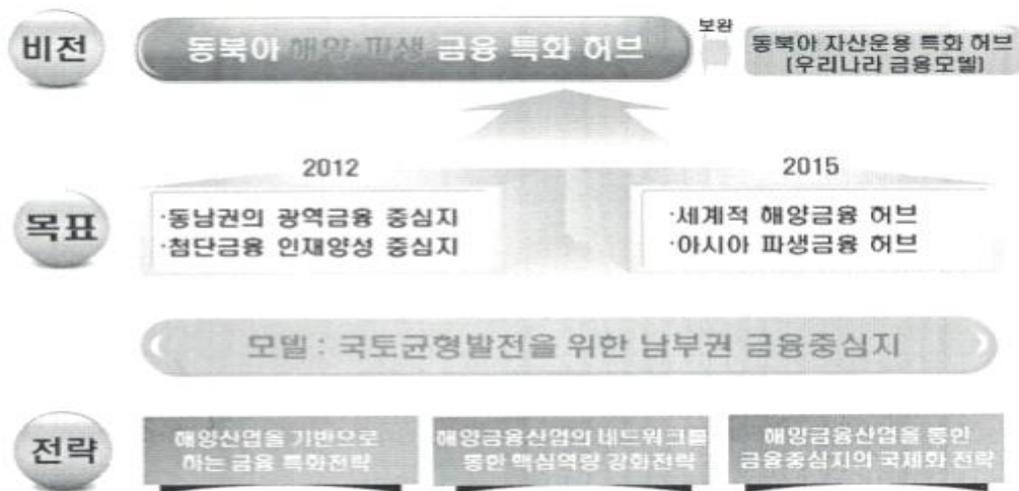
I. 서론

1. 연구배경

가. 부산금융중심지의 성과와 한계

- 2008년 부산금융중심지 개발계획에 의하면 부산금융중심지의 비전은 “동북아 해양·파생 금융 특화 허브”가 되는 것이었음
 - 2012년까지의 목표는 동남권의 광역금융 중심지가 되는 것이었음
 - 2015년까지의 목표는 아시아 파생금융 허브와 세계적 해양금융 허브가 되는 것이었음

<그림 I-1> 2008년 「부산 금융중심지 개발 계획」 상의 금융중심지 부산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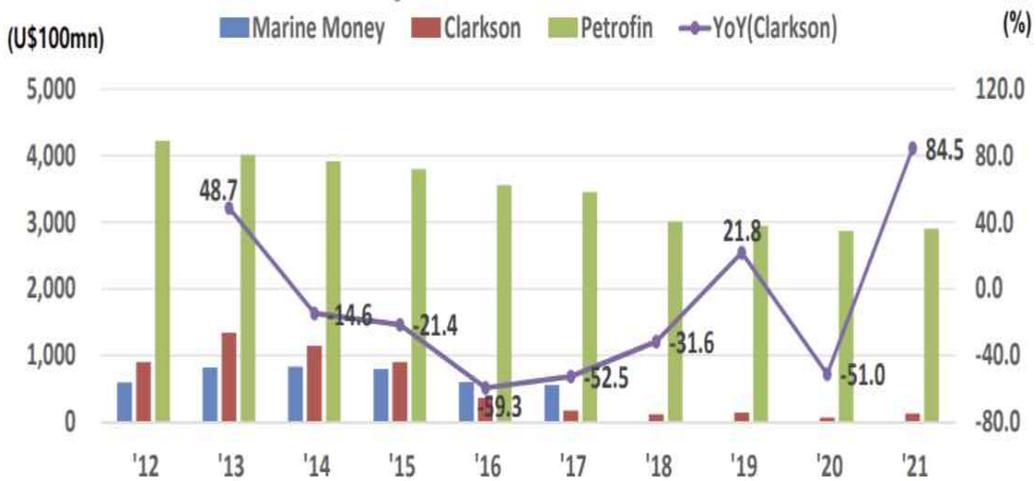


- 글로벌 선박금융시장의 동향에 의하면, 2021년부터 선박투자가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2020년 하락했던 기관투자자 및 자본시장의 유입과 유럽 선박금융시장의 안정화 때문이었음<그림 I-2참조>

○ 지역적으로는 EU지역의 하락과 동시에 아시아지역의 성장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음<그림 I-3참조>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계 은행은 선박금융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음에 반해, 중국의 은행과 같이 아시아계 은행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글로벌 선박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그림 I-2> 글로벌 선박금융시장 규모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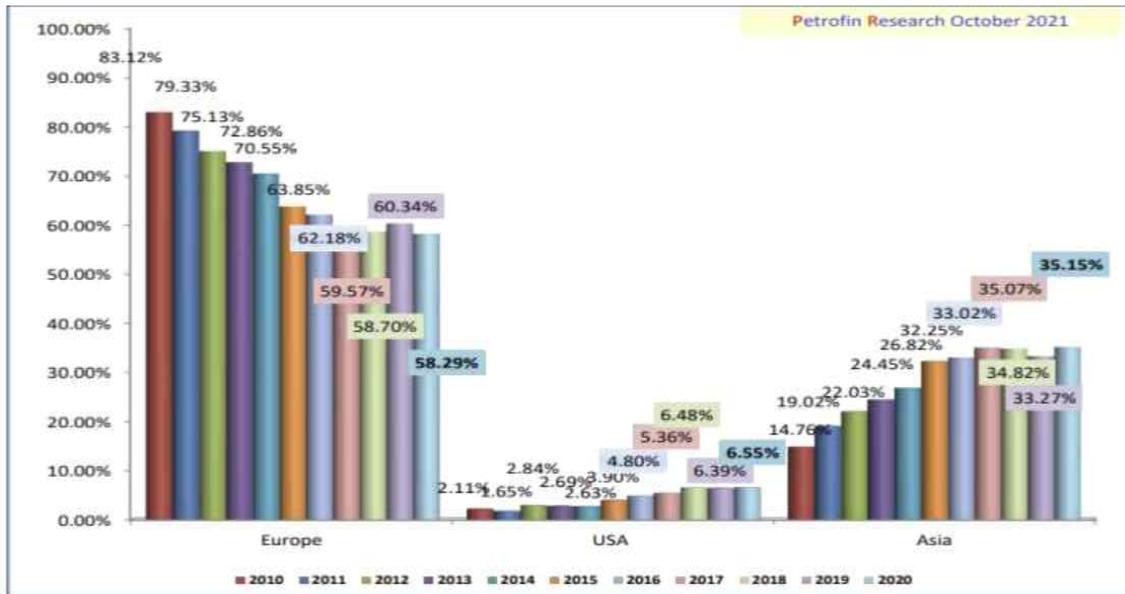


Note: The year-on-year rate of change is based on Clarkson
 Source: Marine Money, Clarkson, Petrofin

○ 2021년 상위 40개 대형 은행의 선박금융 대출의 규모는 2020년에 비해 1.12% 증가하였음<그림 I-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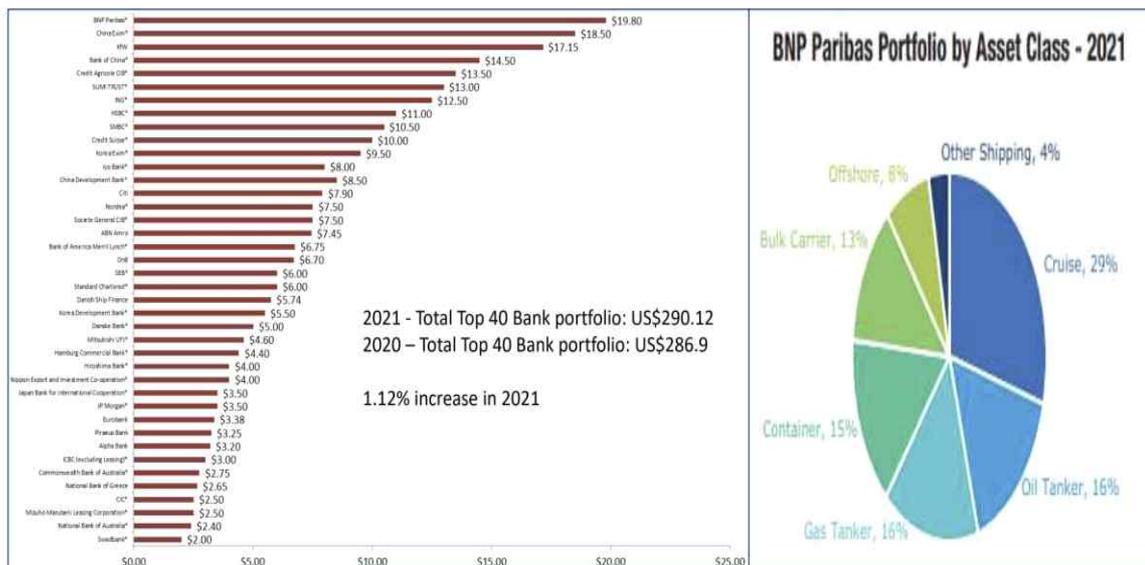
- 상위 40개 대형 은행에 속하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도 선박금융 대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림 1-3> 지역에 따른 글로벌 선박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Source : Petrofin Research(2021.10)

<그림 1-4> 상위 40개 대형은행의 선박금융 포트폴리오의 변화



Source : Petrofin Research(2021.10)

- 국내 선박금융이란 국내·외 선주가 선박을 건조하거나 선박을 매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국내기관에서 조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국내 선박금융의 규모는 2014년 356억 달러, 2015년 262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였는데, 선복과잉 현상과 저 시황의 영향으로 시장의 규모가 급감하였다가 2018년 미국 셰일가스 붐에 따른 LNG선 발주로 인해 293억 달러 규모까지 다시 확대되었음<그림 I-5 참조>

<그림 I-5> 2014-2019 국내 선박금융 추정 규모

단위: 억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내 조선소 수주금액	334	240	44	173	274	70
국내선사	11	32	7	23	35	11
해외선사	323	208	37	150	239	59
국내 해운기업 신조발주 금액	16	45	10	33	50	16
국내조선	11	32	7	23	35	11
해외조선	5	13	3	10	15	5
국내 중고선 매입금액**	17	8	6	12	4	3
국내 선박금융 추정 규모	356	262	53	195	293	78

* 2019년 6월까지 취합액

** 국내 중고선 매입액 × 5년 선령 주요선종 평균 중고가(Clarkson 5Y Clarkprice Index)

* 출처: 전형진·윤희성·윤재웅, 국내외 해운금융 비교를 통한 국내 해운금융 역량강화 방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12.

○ 국내 선박금융의 경우 정부계 금융기관의 역할이 시중은행에 비해서 훨씬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부산에 해양금융종합센터가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양금융 기능만을 모아놓은 것임. 따라서 정부주도형 해양금융의 발전이라는 한계가 있음<그림 I-6 참조>
- 이에 더하여 2018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부산에 설립됨으로써 해양금융의 정부주도적 성격은 더욱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림 1-6〉 2014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의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



- 2018년 9월부터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양금융대학원과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 2020년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 2018년 한국금융연구원의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2030」 연구용역결과, 민관협력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2020년 7월 1일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출범함
- 2020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3층 공간(D-Space BIFC)에 홍콩 등을 비롯한 국제적 금융회사 3개사를 유치하였음

	금융회사	국가
1	BMI GROUP Limited	홍콩
2	(주)한국시티은행	미국
3	(주)요즈마그룹 코리아	이스라엘

- 2022년 9월 기준으로 부산광역시는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er Index; GFCI) 순위에서 29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순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파생상품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장내파생상품시장이 존재함
 -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주요 플레이어(player)인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가 대부분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산을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중심지라고 부르기에는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음

나. 디지털금융의 도래와 부산금융중심지

1) 디지털 금융(Digital Finance)

-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금융”을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금융서비스의 전통적인 제공방식을 변화시킨 다양한 제품, 절차, 사업모델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온라인금융, 인터넷금융, P2P 금융, 핀테크, 빅테크,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 디지털자산(☞암호자산)
 - 1990년대 중순 인터넷의 본격 도입 이후 디지털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종래 디지털화(digitalization)라는 표현에서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
 - 디지털 전환은 경제주체가 디지털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업모델 개발을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과정으로 디지털혁신은 이를 의미함
 - 금융부문에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분산원장 및 블록체인 등의 디지털 전환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금융혁신이 유발되고 있음
 - 최근의 금융혁신은 ① 금융산업의 구조측면과 ② 금융생태계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선 금융산업의 구조측면에서 보면 비금융 IT회사(핀테크·빅테크)가 지급결제·송금, 자금중개, 금융투자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면서 금융회사와 협업 또는 경쟁하는 형태로 금융산업 구조변화를 선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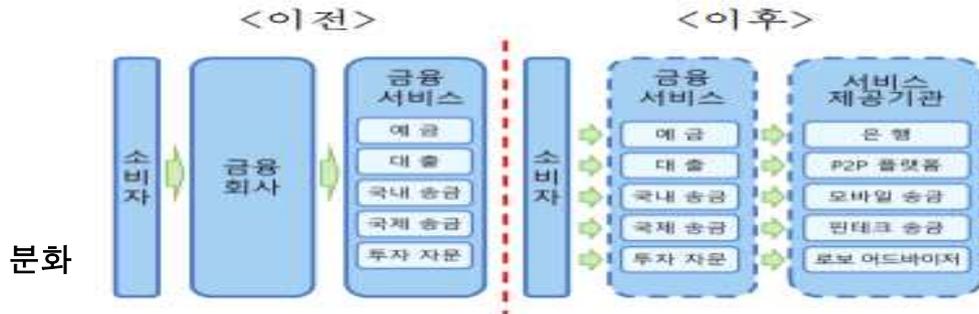
<그림 1-7> 디지털 경제확산과 금융산업 구조변화



*출처: 한국은행,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가능성, 국제경제 리뷰, 제2021-16호, 2021.8.

- 다음으로 금융생태계의 측면에서는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최초 발행된 이후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급증하면서 금융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
 - 특히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회사나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새로운 금융생태계인 디파이(Decentralized Finance; DeFi)를 형성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최근 디파이는 금융중개기관이 없는 결제시스템 뿐 아니라 예금·대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custody:관리·보관)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하여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 디지털 금융혁신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금융서비스는 ① 기능별 분화 및 플랫폼화, ② 탈중앙·탈중개화, ③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한 높은 확산성, ④ 높은 편리성 및 효율성 추구 등이 주요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림 1-8> 금융서비스의 기능별



*출처: 한국은행,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가능성, 국제경제 리뷰, 제2021-16호, 2021.8.

□ 2022년 3월 9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의 보장(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 블록체인(blockchain)

- 블록체인이란 데이터가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에 제반 검증된 거래 또는 정보를 생성하는 어떤 네트워크에 걸쳐 공유되고 일반적으로 그 데이터가 그 원장의 무결성 (the integrity of the ledger)을 유지하고 소유권이나 가치의 이전을 비롯한 여타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암호화(cryptography)의 사용에 연결되는 분산원장기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을 말함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란 국가적으로 통용되는 계산의 단위로 표시된 디지털 형태의 화폐 혹은 금전적 가치로서,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암호화폐(cryptocurrencies)

- 암호화폐란 교환의 매개가 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그 생성 혹은 소유권 기록이 블록체인과 같이 암호화에 의존하는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지원되는 것을 말함

○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

- 디지털 자산이란 그 사용된 기술과 관계없이 모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그리고 지급이나 투자를 위해 혹은 자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전송하거나 교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치, 금융성 자산과 상품, 혹은 청구권에 관한 그 밖의 표시로서,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거나 표시되는 것을 말함
- 예를 들면, 디지털 자산에는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포함됨

- 디지털 자산은 그 사용된 표식(label)과 관계없이, 증권(security), 상품(commodity), 파생상품(derivative), 혹은 그 밖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할 수 있고, 중앙화된 그리고 탈중앙화된 플랫폼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거래플랫폼에서 교환되거나 P2P 기술을 통해 교환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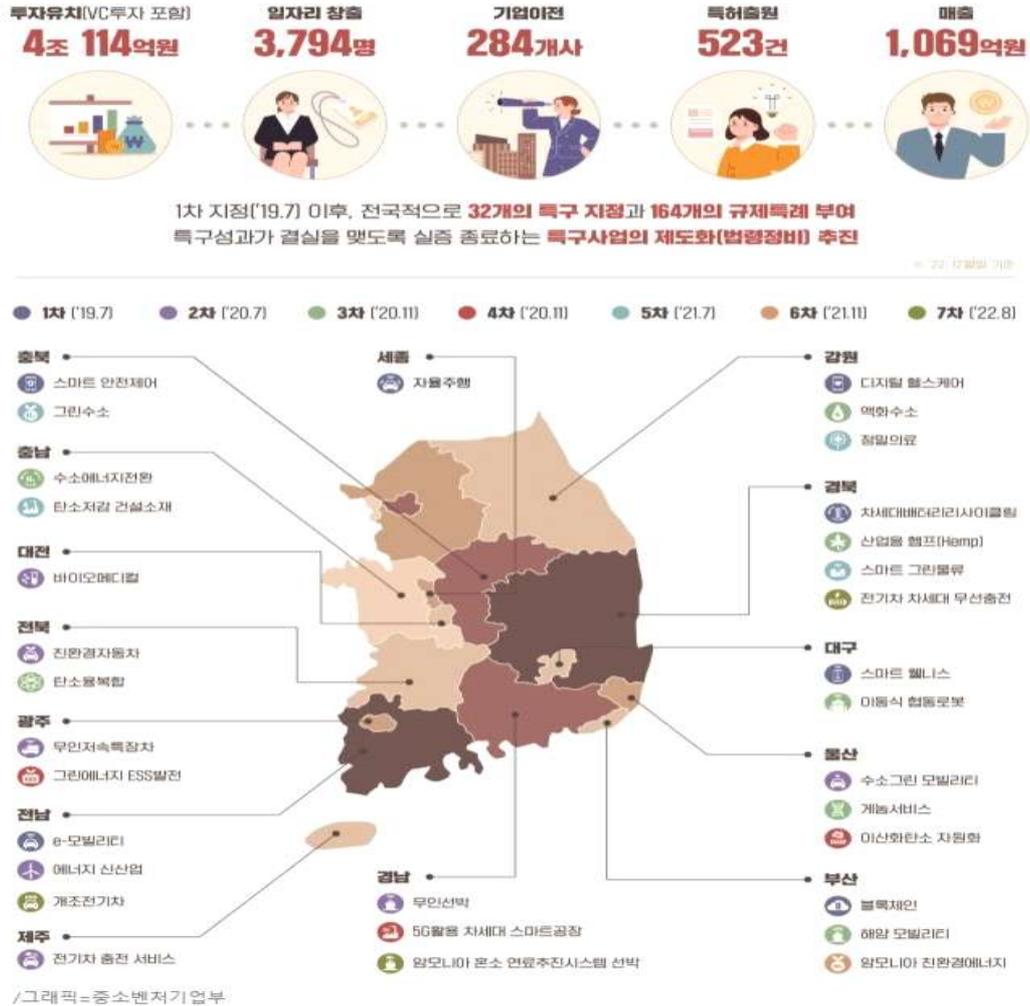
○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

- 스테이블코인이란 암호화폐의 범주의 하나로서, 그 코인의 가치를 특정 화폐, 자산, 혹은 자산의 집합물에 고정하는 방식에 의해 혹은 가치의 안정을 위해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공급을 알고리즘으로 제어하는 방식에 의해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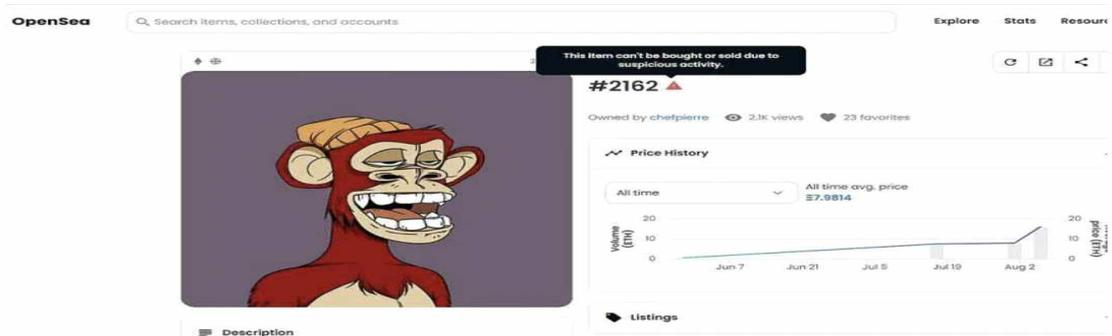
2) 부산금융중심지의 기회요인: 블록체인특구

- 부산은 블록체인특구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금융혁신에 유리한 환경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그림 I-9 참조>
- 암호화폐, 증권형 토큰(Securities Token; STO), 탈중앙화 자율기구(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s; NFTs) 등의 디지털자산관련 산업 발전가능성이 높음<그림 I-10참조>

〈그림 1-9〉 정부의 규제특구 지정의 현황과 효과



〈그림 1-10〉 싱가포르 법원 판결 사건 : Bored Ape Yacht Club(BAYC N0.2162)



Justice Lee Seiu Kin issued the grounds of his decision in May to grant an injunction stopping any potential sale and ownership transfer of a Bored Ape Yacht Club NFT, on Oct 21, 2022. PHOTO: OPENSEA

2. 연구목적

가. 문제의식

- 부산금융중심지가 해양금융 및 파생금융의 중심지로서 발전해 오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해양금융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이것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양금융 기능만이 이전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음
 - 해양금융은 국제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주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과 같은 공적 금융회사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즉, 민간 부문의 시중은행의 해양금융의 참여 및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부산에 설립되어 해양금융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공적 금융회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파생금융의 측면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장내파생상품시장을 개설하고 있지만,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주요 플레이어(player)인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는 대부분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에 한계가 있음
 - 부산이 해양금융 및 파생금융의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국계 금융회사 및 금융관련 중개회사 등이 유치되어야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부산금융중심지가 독자적으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금융정책의 수립 기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산이 자율적으로 금융정책을 실행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나. 법제 개선방향

1)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추진 조직의 개선방안

- 금융중심지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제고하고,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조직의 권한이 확대 및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영국, 싱가포르 등의 해외사례를 분석한 후, 금융중심지 추진조직의 법적 위상 제고 및 권한 확대 및 강화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2) 규제샌드박스 및 소규모 금융회사 등록제도 개선방안

-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규제샌드박스제도를 부산금융중심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나아가 소규모 금융회사의 등록을 부산금융중심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금융회사 유치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영국, 싱가포르, 미국 등의 해외에서의 규제샌드박스제도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부산금융중심지에 한정된 규제샌드박스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나아가 소규모 금융회사의 등록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3) 금융중심지 관련 특례 법제의 체계화 방안

- 금융중심지의 발전과 활성화와 관련한 다수의 법안, 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는데, 이들 다수의 법안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분석하여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함
-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중심지 관련 법제가 체계화 및 최적화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II. 금융중심지법상의 추진위원회 및 추진조직

II. 금융중심지법상의 추진위원회 및 추진조직

1.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현황

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권한과 역할

1) 설치근거

- 정부는 2003년 12월 국정과제 회의¹⁾와 2005년 6월 금융허브회의 등을 통해 금융허브의 개념을 정립하고,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 2006년 금융허브정책의 추진을 위해 경제부총리(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음
 - 금융허브추진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닌 임의기구였으나 당시 기획예산처, 노동부, 건설교통부, 법무부 장관 등 10개 부처 정부위원과 14개 유관기관의 기관장 및 6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20명의 민간위원 등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
- 2007년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중심지법')이 제정되면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로 개칭하여 법정기구화되었음
 - 금융중심지법을 제정하면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별도의 행정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 산하의 위원회로 설치하였음(동법 제6조)
 - 2007년 금융중심지법 제정시에는 재정경제부의 소속 위원회였으나, 2008년 동법의 시행 시점에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로 개정되면서 금융정책에 관한 업무가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되었고,
 - 이에 따라 금융중심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가 금융위원회로 이관되었으며, 2008년 3월 22일 동법 시행시에 금융중심지법의 소관부처가 금융위원회로

1) 2003.12월 제32차 국정과제회의에서는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확정하였고, 동 추진전략은 2007년까지 금융허브 기반을 구축하고, 2012년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를 완성 후, 2020년까지 아시아 지역 3대 금융허브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되었고, 이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도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되었음²⁾

- 금융정책에 관한 업무는 금융위원회의 소관업무이고, 금융중심지에 관한 사항도 금융정책업무로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임의기구 또는 금융위원회의 자체 자문위원회(예를 들어, 금융발전심의회) 형식이 아닌 별도의 심의기구로 법정화한 것은 금융중심지 추진 및 실행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 할 수 있음

2) 권한

- 금융중심지법 제정 이전에 있었던 금융허브추진위원회는 법정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심의 및 의결 권한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이면서,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허브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각 부처에서 실행하는 구조로서 금융허브정책에 대한 사실상 결정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음
- 금융중심지법 제6조제1항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권한을 심의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³⁾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금융중심지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나,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을 실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의결권한이 아닌 심의권한만을 부여한 것임
 - 그러나 단순심의에 그치지 않고, 심의사항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심의사항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동법 시행령 제11조)
 - 법률에서 심의라고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의결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위임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심의라는 행위는 단순히 의견을 말하는 자문에 그

2) 금융위설치법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6호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이 규정.

3) 2006.11.21. 국회에 제출된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의 수립,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금융중심지센터의 장이 보고하는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애로사항의 처리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다고 제안되어 있었음(국회재정경제위원회,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2006.11, 2면).

치는 것이 아니라 심의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행위로 의결 행위는 당연히 심의권한에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음⁴⁾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심의대상은 “금융중심지의 조성
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등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실
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금융중심지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서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금융중심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추진
사항 점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조정 등에 관해서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동법 제6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
 - 특히 기본계획, 금융중심지 지정해제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
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이 금융위원회를 기속되는지 여
부에 대해서 금융중심지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속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중심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금
융위원회에 소속된 심의·의결기구에 불과하고, 금융중심지법 제6조제1항의 기
본계획, 동조 제5항의 금융중심지 지정 등의 주체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임
 - 따라서 상급기관이며, 최종적인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행정
행위를 기속한다고 보기 어려움
 - 유사한 사례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심사위원
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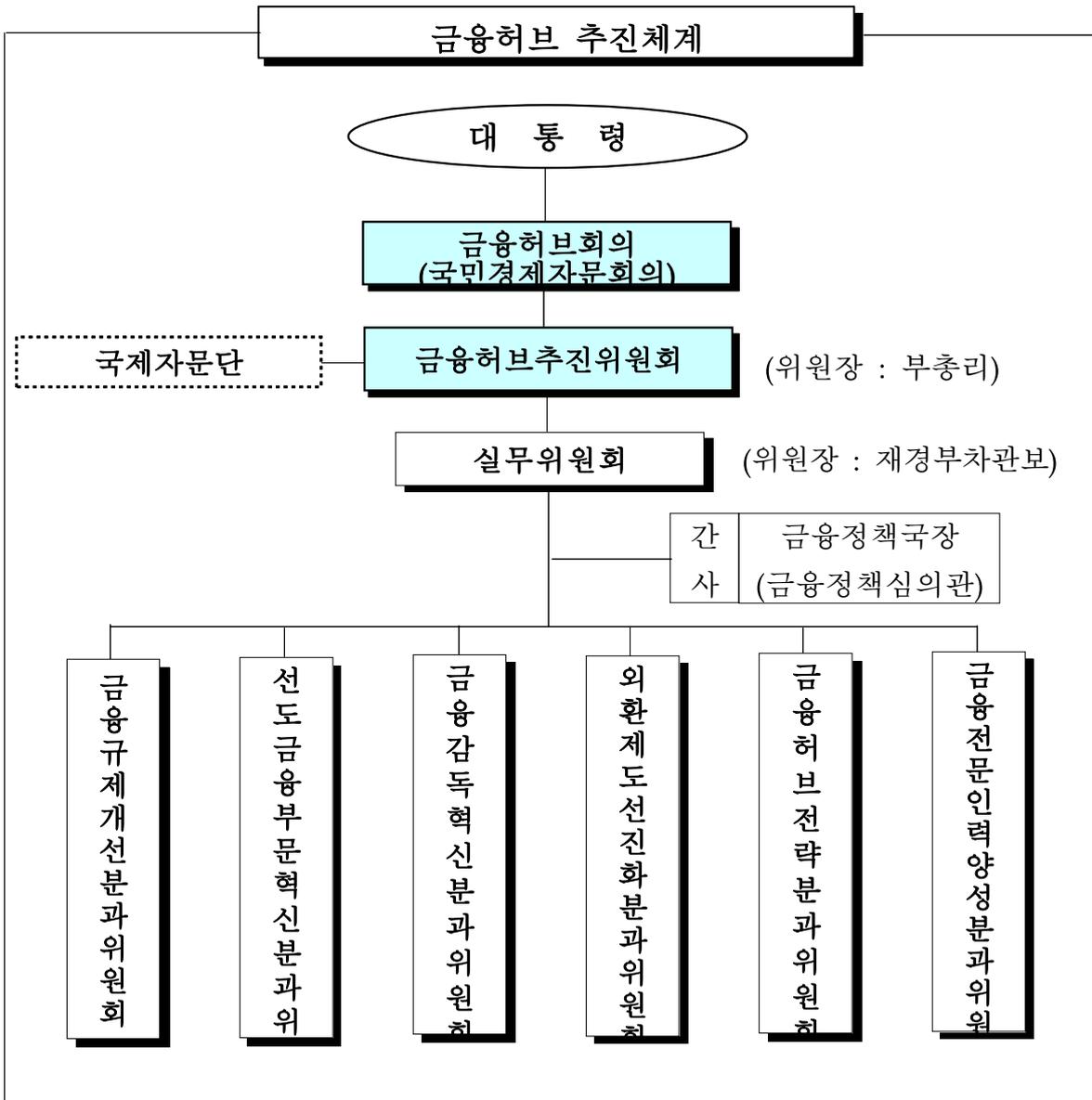
4) 최승필, 동북아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금융규제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은
행법연구 제1권제1호, 2008, 239면에서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규정한 근거
가 없으나, 법문의 해석과 동 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업무의 성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심의기관
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단순한 심의기관인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경우처럼 의
결기관인지 법적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3) 구성

□ 2005년 정부는 금융허브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의 금융허브체계를 구축하였음

○ 금융허브체계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금융허브회의체를 운영하고, 그 아래에 금융허브추진을 위한 금융허브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6개 분과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하고 있음

〈그림 II-1〉 금융허브추진위원회 구성



- 금융허브추진위원회는 경제부총리인 재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로서 산하에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음
- 금융허브추진위원회는 금융허브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금감위등 9개 중앙부처 장관, 서울시 행정부시장, 한국은행 등 13개 유관기관의 장, 민간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

정 부 위 원	민 간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부총리(위원장) - 법무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산업자원부 장관* - 건설교통부 장관* - 노동부 장관* - 기획예산처 장관 - 금감위원장 - 교육부 차관* - 서울시 행정부시장 - 기타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 총재 - 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 한국투자공사사장 - 예금보험공사사장 - 증권업협회장 - 손보협회장 - 선물협회장 - 기타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은행 총재 - 수출입은행장 - 자산관리공사사장 - 증권예탁결제원사장 - 은행연합회장 - 생보협회장 - 자산운용협회장 - 분과위원회 위원장(6인)

*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시 참석

- 실무위원회 :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로 재경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여 금융허브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부처, 기관의 실무급 책임자 및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간사 :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금융정책심의관)]
- 분과위원회 :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금융허브정책 과제의 지속적 검토·추진을 위한 금융규제개선, 선도금융부문혁신, 금융감독혁신, 외환제도선진화, 금융허브발전전략, 금융전문인력양성분과위원회등 6개 분과위원회로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여 학계·연구기관·업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안건 등을 검토과제로 하고 있음

〈표 II-1〉 금융허브추진위원회 분과별 검토과제

분과위원회	검토과제(예시)
금융규제개선분과위원회	- 금융규제 개선에 대한 방향 및 기준 수립 -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발굴과제 검토 - 외국기업 등 각종 업계로부터의 건의사항 검토 등
선도금융부문혁신분과위원회	- 자본시장 육성방안 - 대체자산시장(PEF 등) 활성화 방안 -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등
금융감독혁신분과위원회	- 서비스 중심 감독업무 체제 확립 - 시장 친화적 검사업무 실시 - 감독기관의 역량 강화 등
외환제도선진화분과위원회	- 외환시장 규제완화 -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 외환자유화의 조기 완료 - 외환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등
금융허브전략분과위원회	- 금융허브 전략의 수립 - 외국 금융기관 유치 - 자본인프라 수출, 금융시장의 국제화 - 지역 특화 금융수요(개발금융, 구조조정, 선박금융) 개발 - 금융집적지역 조성의 필요성 검토 - 경영·생활환경 개선
금융전문인력양성분과위원회	- 금융전문대학원의 육성 지원 - 금융인력 네트워크 형성 등

□ 금융허브추진위원회는 2007년 금융중심지법 제정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로 법정기구화되었음

- 금융중심지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30인 이내의 위원회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됨(동법 제6조제2항)
- 민간위촉위원은 금융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로서 임기는 2년으로 연임가능함(동법 제6조제3항 1호)

- 민간위촉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호에서 보다 상세히 하고 있음
- 당연직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금융유관기관의 장임(동법 제6조제3항 2호 및 3호)
- 금융중심지법 제정당시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의 정부부처와 한국은행 총재, 한국산업은행 총재, 한국수출입은행장 등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0년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일부 정리되었음

〈표 II-2〉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 요건

구분	자격요건 등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위촉위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재직하면서 금융 또는 투자 분야의 근무·연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금융·투자 또는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3. 국제금융기구에서 국제 금융 또는 투자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당연직 위원 (행정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 차관 2. 산업통상자원부차관 3.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당연직 위원 (금융 유관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의 사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이사장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의 회장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회장 5.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회장 6.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회장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2020년 기준으로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0년 기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표 II-3〉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원(2020년)

구분	구성원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위촉위원(10명)	교수, 은행장 등 10명
당연직 위원 (4명 : 행정기관)	1. 기획재정부 차관 2. 산업통상자원부차관 3. 서울시장 4. 부산시장
당연직 위원 (6명 : 금융 유관기관)	1. 한국투자공사 사장 2. 한국거래소 이사장 3.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4.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회장 5. 생명보험협회 회장 6. 손해보험협회 회장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2020년 기준으로 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였음
 - 분과위원회는 금융중심지법이 제정되면서 사라졌었으나,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2019년에 다시 구성한 것으로,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음
 - 동법 시행령 제11조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분과위원회는 ①정책총괄, ②금융인력 양성, ③국제협력 등 3개 분과 총 14명으로 구성되었음
 - (정책총괄 분과)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방향·목표를 논의하고, 종합적인 추진전략 도출
 - (금융인력양성 분과) 금융전문인력 양성정책의 기본 방향 및 기존 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 (국제협력 분과) 외국계 금융회사 유치전략, 해외 IR 내실화 등 금융중심지 활성화 방안 논의
- 분과위원회는 실무진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민간을 분과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

〈표 II-4〉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

구분	내용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5명)	민간위원 10명 중 5명 내외 선정
금융회사(6명)	유관 금융기관 위원 추천 각 1명
연구기관(3명)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소속 각 1명
계	총 14명

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심의사항

1) 심의대상

- 금융중심지법 제6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대상은 8개의 법정사항과 1개의 임의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금융중심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심의대상은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비롯하여 금융중심지정책 추진 및 실행에 관한 주요 사항임
 - 임의사항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으로 예를 들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분과위원회 설치, 기본계획에 관한 용역 보고 등의 안건이 이에 해당함

〈표 II-5〉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심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2.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3.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4.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5.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장이 국내외 금융기관의 경영환경과 관련하여 보고하는 경영
--

<p>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의 점검 및 법령·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p> <p>6. 금융중심지의 지정과 해제,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p> <p>7. 금융전문인력의 양성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p> <p>8.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p> <p>9.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p>
--

- 기본계획 수립 및 금융중심지의 지정해제의 경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항임
 -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실행주체는 금융위원회로서 세부적인 정책추진사항등에 대해서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함
 - 금융중심지법 제6조제1항도 금융중심지 관련 안전 등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둔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반드시 사전심의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기본계획의 수립 및 금융중심지 지정해제(일부해제 및 변경포함)의 경우에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하고 있어(동법 제5조제3항 및 시행령 제7조), 해당 안전의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필수적임

2) 기본계획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은 금융위원회가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2023년 3월 기준으로 제6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음
 - 2008년 8월, 「제1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08~’10) 수립
 - 2009년 1월, 서울·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
 - 2011년 9월, 「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1~’13) 수립
 - 2014년 10월, 「제3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
 - 2017년 10월,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7~’19) 수립
 - 2019년 5월,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2) 수립

-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소관분야의 계획과 시책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국내외 금융기관 및 유관 기관에게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제출받은 계획과 시책,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이때 금융중심지법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표 II-6> 기본계획 포함사항

1.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한 외국환, 그 밖의 금융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한 금융시장의 지원·육성
4.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한 금융 관련 규제 및 금융감독체제의 개선
5.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한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의 개선
7. 해외 금융시장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정 분야의 금융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화금융의 개발·지원
8. 금융업과 관련된 정보통신체제의 발전·지원
9.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10.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
11. 금융 관련 조세체제의 개선
12.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금융위원회가 수립한 기본계획안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기본계획으로 확정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권한임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은 “기본계획안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제4항은 기본계획 확정 주체를 금융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기본계획이 아닌 기본계획안을 심의 및 의결을 통해 확정하는 것임

3) 기타 심의사항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기본계획 이외도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정책,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대상임
 - 기타 심의사항 중 금융중심지 해제 및 개발계획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결정전에 사전 심의하여야 함

2.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한계 및 문제점

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지위적 한계

1) 위상의 격하

- 현행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금융중심지법 시행시점에 금융정책업무가 금융위원회로 이관되면서 그 위상이 경제부총리급 위원회에서 장관급위원회로 하락하였음
 - 2007년 금융중심지법 제정 당시에는 위원장은 경제부총리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으며, 정부측 당연직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었으나, 2008년 시행과정에서 위원장과 당연직위원의 직위가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변경되었음

〈표 II-7〉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 변화

금융중심지법 2006년 제정당시	금융중심지법 2008년 시행 및 현행
제6조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u>재정경제부장관</u> 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금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	제6조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u>금융위원회 위원장</u> 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1. 금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로 정하는 자 3. 금융 유관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금융 유관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
--	--

○ 이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전신이었던 금융허브추진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 보다 그 위상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상이 장관급으로 하락하면서 부처간 위상문제로 인하여 금융위원회가 다수 부처 관련사항이나 참여자간의 이해상충 사항 등을 조정 내지 조율 등을 주도하기 어려운 구조임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은 금융산업 및 금융규제 분야 뿐만 아니라 주거지, 교육, 의료 등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 등과도 연계된 사항으로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함

○ 이와 유사한 문제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도 발생하여 2017년 소비자기본법 개정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공정거래위원장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음

- 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시 위원장은 경제부총리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으나, 2007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소비자정책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위원장도 경제부총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변경되었었음

2) 관계 행정기관의 축소

□ 2022년 기준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은 5개로 감소하였음

○ 금융중심지의 조성등은 금융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인프라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의무적으로 참석해야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

○ 금융허브추진위원회에서는 총 10개 행정기관이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를 포함하여 5개 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표 II-8〉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 변화

금융허브추진위원회	금융중심지법 시행시	현행
1. 경제부총리(위원장) 2. 법무부 장관 3. 보건복지부 장관 4. 산업자원부 장관 5. 건설교통부 장관 6. 노동부 장관 7. 기획예산처 장관 8. 금감위원장 9. 교육부 차관 10. 서울시 행정부시장 11. 기타 위원	1. 금융위원회 위원장 2. 기획재정부 차관 3.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4. 지식경제부 차관 5.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6. 국토해양부 차관 7.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전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8.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1. 금융위원회 위원장 2. 기획재정부 차관 3. 산업통상자원부차관 4.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전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5.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서울 시 및 부산시)

○ 금융허브추진위원회에서는 총 10개 행정기관이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를 포함하여 5개 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참석 대상 행정기관 수의 감소는 금융중심지 조성 등의 추진 및 실행에 지연 등 실무적 어려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예를 들어,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주거, 의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부처(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및 지방정부(관할 시·도 이외에도 주변 지역 등) 등의 협력이 필요하나, 의무적 참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물론 회의 안전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안전별로 참석하는 경우 금융중심지 추진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음

3) 권한상 한계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권한은 안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지만,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음

○ 즉,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의결은 금융위원회의 안전으로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으로 안전에 대한 최종결정권한은 아님

- 금융중심지법 제5조제3항 및 시행령 제3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간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음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나, 합의제 기구형식을 취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조직적 특성상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再논의를 거쳐 변경될 가능성도 있음⁵⁾
 -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로서 금융위원회의 의결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
 - 따라서 금융중심추진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과거 금융허브추진위원회 및 금융중심지법 제정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합의제 기구가 아닌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再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4) 지정 금융중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상 한계

-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지방조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융중심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금융중심지법 제1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의2는 금융중심지 관할 시·도지사의 재정지원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보조금 지급,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금융중심지 관할 시·도지사는 국가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일정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금융중심지법 제12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의3)
 - 국가는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5)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사안에 대한 심의를 넘어 의결 기능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 제정 당시에도 제기된 바 있음(한국금융연구원,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금융관련 행정의 국제화 방안“, 2007.12.24., 75면)

고시 제2015-20호)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국가가 금융중심지 관할 시·도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항목 및 한도는 다음과 같음

〈표 II-9〉 금융중심지 자금지원기준

구분	목적	한도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토지나 건물이 아닌 사업용 설비를 설치·구입·임차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나 외국으로부터 기존 사업용 설비를 반입·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부대경비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10 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다만, 위원회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유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당 금액 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규고용자금	금융기관등이 내국인을 신규고용하는데 필요한 자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기관당 6천만원 이내)
교육훈련자금	금융기관등이 내국인을 신규고용 후 경영전문대학원 또는 금융전문대학원에 해당하는 국내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기관당 6천만원 이내)

- 위와 같이 금융중심지 관할 시·도는 금융중심지의 구성에 관해 행정상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은 한계가 있어, 금융중심지 발전에 한계가 있음

- 금융중심지를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보조금지원정도의 수준 뿐만 아니라 조세 감면,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중심지 관할 시·도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최근 금융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영어통용이나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 등 국제화,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리한 생활편의성 측면에서 다른 경쟁국가들에 비해 뒤쳐져 있음
- 물론 생활환경 뿐만 아니라 금융관련 규제도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규제적인 측면은 금융감독당국 및 금융업계 등을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으나, 사회적 인프라 등의 측면은 금융분야 정부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성상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금융중심지 관할 시·도지사가 주체적으로 금융중심지 전략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3. 금융중심지 추진 관련 해외사례

가. 두바이

- 아랍 에미레이트 연방(UAE)은 2004년 헌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가 독점적인 입법 및 행정관할권을 갖게 되어, 이를 근거로 연방법 제8호, 제35호 등을 통해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를 설립하였음
 - 연방법 제8조는 금융자유구역(Finacial Free Zones)을 연방법 제35호는 두바이의 110헥타르를 금융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DIFC를 설립하였음
 - 두바이 법률 제9호와 제12호를 제정을 통해 DIFC의 금융 및 행정상 독립성을 보장하였고, 사법 행정권의 독립을 선언하였음
- 2004년 두바이 법률 제9호 및 제12호는 DIFC의 주요 관리기관으로는 DIFC청, 두바이 금융서비스 당국 (DFSA; 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DIFC 법원 등 3개 기관을 두고 있음
 - 두바이법 제9호가 3개 기관을 법정기관으로 두고 있지만, 청장, 센터 임원, DFSA의 이사회 장, 센터 법원의 장 등으로 구성된 고등위원회를 두고 있음
 - DIFC청은 DIFC의 전략, 정책 및 목표에 대한 수립 및 검토, 추진에 관한 총괄업무를 수행함
 - DFSA는 DIFC에 입주한 금융회사를 감독하고, 해당 법률 및 규칙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
 - DIFC 법원은 독립된 사법행정을 제공하고 있어, UAE의 법률이 아닌 DIFC의 법률을 근거로 재판을 수행하며, 판사임명 등과 같은 사법행정도 UAE에서 독립되어 있음

- DIFC는 금융규제에 관해서도 국제 기준에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DIFC청은 인프라 등 금융중심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모든 요소를 원스톱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표 II-10〉 DIFC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제공된 인센티브

○ 100% 지분투자 허용
○ 소득과 수익에 대한 세금면제(40년)
○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법인단체
○ 무제한 자본과 수익의 자유로운 본국송금 허용
○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법과 규정
○ 주요 국제 재판권에 위치한 기타 금융 규정기간과 함께 일하는 국제적 독립 규정기관
○ 투명한 경영 환경 조성
○ 두바이와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숙련된 전문가들
○ 현대적이고 능률적인 교통, 통신 및 인터넷 등 첨단 인프라 구조
○ 원스톱 비자, 노동허가증 발급 등 서류관련 서비스 제공

나.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금융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리적, 사회적 이점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 정책 추진이 큰 역할을 하였음
 - (지리적 이점)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뉴욕과 런던 사이의 시간대에 위치하여 뉴욕과 런던시장이 모두 마감된 시간에도 외환 및 금융거래를 가능케 하는 지리적 이점이 있음
 - (규제적 이점) 영국의 식민지시대 초기 1826년 칙령에 따라 영국의 모든 법률이 싱가포르에 적용되면서 서구의 법률 및 금융제도가 토착화됨
 - (사회적 이점) 싱가포르는 국가정책으로 금융산업을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이 강화되었고,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고유언어 뿐만 아니라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면서 국제금융업무에 용이한 인적환경이 구성되어 있음
 - (정부의 육성정책) 1960년대부터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를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육성정책을 추진하였음
 - 첫째, 조세 및 규제를 다른 국가보다 낮게 유지하여 다양한 경제적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융인프라를 확충 개선하여 외국 금융기관 등을 싱가포르에 유지하는 정책

- 둘째, 국제금융업과 국내금융업 사이에 차단벽(separation fence)을 설치하여 양 부문간에 차별적인 규제정책 추진하여, 금융중심지로서 역할을 강화하되, 국내 통화정책의 독립성 확보
- 셋째, 싱가포르 소재 금융기관들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규제 및 감독정책 추진

□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는 장점을 살려 금융중심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영어사용, 고급인력 양성, 사법제도 등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는 역사적 이유로 인하여 일정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 금융중심지 추진 정책은 규제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음
- 2017년 경제개발위원회법에 설립된 경제개발위원회(SEDB;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은 싱가포르의 경제개발 및 국제금융센터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으로 싱가포르의 모든 부처 및 민간 이해관계자간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EDB는 싱가포르에서 금융업을 하려는 사업자에 대해서 관련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다른 부처와 의견을 조율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
-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싱가포르의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금융발전기금(FSDF;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Fund)를 관리하면서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음

□ MAS는 금융중심지와 관련해서는 세제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금융부분인센티브제도(FSI; Financial Sector Incentive)는 인가된 금융회사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현재 FSI제도에 따르면 13.5%의 우대세율(일반적인 싱가포르 법인세율은 17%임)을 적용하고 있음
- FDSF를 통해 금융회사 및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조금의 범위는 기존 금융사업분야 뿐만 아니라 혁신금융분야, 직원에 대한 교육 등 광범위함

4.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 방안

- 앞에서 살펴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및 행정체계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지위의 격상 및 금융중심지 관할 시·도지사의 권한 확대 2가지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금융중심지 추진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장관급 위원회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총리급 또는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것이 필요함
 -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서는 금융중심지 관할 시·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지위 격상

- 금융중심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장관급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지위를 국무총리급 또는 경제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야 함
 - 금융중심지의 추진은 관련 규제 및 지역 인프라 구축이 필수로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임
 - 중앙행정기관의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데,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기 때문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지위를 국무총리급 위원회로 격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됨
 - 국무총리급으로 격상하는 경우 국무조정실이 금융중심지 관련 정책에 대한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국무총리급으로 격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금융허브추진위원회와 유사하게 경제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지위를 격상하면서 정부측 당연위원의 지위도 장관급으로 격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 또한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금융중심지의 실효성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규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도 중요시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법무부, 교육

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및 해양수산부 등도 포함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디지털금융특구로 전환하는 경우 규모가 작은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양금융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 등의 참여가 필요함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지위를 격상을 위해서는 현행 금융중심지법의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지위격상을 위한 동법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음

〈표 II-11〉 금융중심지법 제6조 개정안(예시)

현행 금융중심지법	금융중심지법 개정안
<p>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2.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3.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4.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5.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의 점검 및 법령·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6.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p>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현행과 동일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금융 유관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설>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금융 유관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3항 각 호의 위원은 각각 10인 이내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위를 위해 간사위원을 1명 두며, 간사위원은 금융위원회위원장이 된다. ⑤ 제3항 각 호의 위원은 각각 20인 이내로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동일 ⑦ 현행 제6항과 동일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지위격상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해서 현재 금융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규정도 국무총리급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함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정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융중심지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함

○ 금융중심지법이 개정되면 시행령 함께 개정될 것으로 본고에서는 시행령 제 10조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예시로 제안함

〈표 II-12〉 금융중심지법 제10조제2항 개정안(예시)

현행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금융중심지법 개정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② 법 제6조 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차관 2. 삭제 <2010. 6. 8.> 3. 산업통상자원부차관 4. 삭제 <2010. 6. 8.> 5. 삭제 <2010. 6. 8.> 6.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② 법 제6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u>장</u>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 장관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3. <u>법무부 장관</u> 4. <u>교육부 장관</u> 5. <u>보건복지부 장관</u> 6. <u>고용노동부 장관</u> 7. <u>국토교통부 장관</u> 8. <u>중소벤처기업부 장관</u> 9. <u>해양수산부 장관</u>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7.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10.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1.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금융중심지 또는 금융특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	--

○ 위 개정안은 금융중심지와 관련된 중앙부처를 예시한 것으로 향후 개정 과정에서 논의를 통해 범위를 확정해야 할 것임

* 참고 유사사례

□ 2007년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2008년 시행시점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지위가 부총리급에서 장관급으로 격하된 바 있음

○ 소비자보호에 관한 업무가 재정경제부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지위도 격하되었고, 참석위원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음

<소비자정책위원회 지위 격하>

소비자보호법	2008년 소비자기본법
제2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소비자보호 및 국민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23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7. 29.> ②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의 장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장과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및 경제단체에서 추천하는 소비자대표 및 경제계대표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5. 12. 29., 1999. 2. 5.> ③제2항의 위원중 관계부처의 장 및 한	제2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③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p>국소비자보호원장외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비자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이하 "등록소비자단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제단체에서 추천하는 소비자대표 및 경제계대표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장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정책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	---

□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지위가 장관급으로 격하됨에 따라 소비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에 2017년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지위를 국무총리급으로 다시 격상하였음

○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지위가 격상됨에 따라 참석위원의 지위도 장관급으로 변경됨

<소비자정책위원회 지위 재격상>

개정전 소비자기본법	개정 소비자기본법
<p>제23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23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2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p>	<p>제2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p>
	<p>1. 소비자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다. <개정 2008.2.29></p> <p>1. 소비자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2.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이하 "등록소비자단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제단체에서 추천하는 소비자대표 및 경제계대표</p> <p>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장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p>⑤ 정책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p>	<p>부한 자</p> <p>2.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이하 "등록소비자단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제단체에서 추천하는 소비자대표 및 경제계대표</p> <p>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장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p>⑤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된다.</p>
---	--

나.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관할 시·도의 권한 확대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지위를 격상하고, 그 권한을 확대하더라도 금융중심지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의 권한도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인프라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인프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개발계획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고, 우리나라의 특성상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권한상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음
 - 또한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관련 인프라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당사자는 중앙정부가 아닌 관할 시·도이기 때문에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권한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
-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에 대한 관할 시·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2가지를 제시하고자 함
 - 규제샌드박스형 모델 : 현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상의 특화특구 또는 규제자유특구와 유사하게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관련 계획 등에 대해서 관련 규제를 완화 또는 면제하는 모델임

- 특별지역지정 모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과 유사하게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지역 및 주변 인프라와 관련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모델임

1) 규제샌드박스형 모델

- 규제샌드박스형 모델은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관할 시·도지사가 규제특례등을 요청하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필요한 규제특례등을 부여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규제특례등의 범위는 다른 규제샌드박스처럼 특정 분야 또는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와 연관된 규제 및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규제특례등은 규제 및 지역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지위 격상이 전제되어야 함
- 규제샌드박스형 모델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순서화할 수 있을 것임
 - (1단계)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관할 시·도지사의 규제특례등 신청
 - (2단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
 - (3단계)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관할 시·도에 대한 규제특례 부여
- 규제샌드박스형 모델은 금융중심지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규제샌드박스형 모델의 제도화를 위한 금융중심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음

〈표 II-13〉 규제샌드박스형 모델 개정안

<p>제00조(규제특례의 신청) ① 금융특구의 조성과 발전을 위해 규제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이하 '규제특례'라 한다.)을 받으려는 금융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규제특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 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p>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00조(규제특례계획의 수립) ① 금융특구 관할 시·도지사가 규제특례를 신청하거나 기존의 특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공간적 범위
2.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3. 규제특례 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의 시·도 발전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특구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규제특례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기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00조(규제특례 부여등) ①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금융특구 관할 시·도지사가 신청한 규제특례에 대해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면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특구 관할 시·도는 부여받은 규제특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특별지역 지정 모델

- 특별지역 지정 모델은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와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식임
 - 특별지역 지정 모델은 앞서 살펴본 규제샌드박스형 모델과 유사하지만,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제에 관한 권한을 이양받은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유사하다 할 수 있음
 - 중앙정부의 권한이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관할 시·도로 이양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 유형 또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지위가 격상되는 것이 전제됨

- 특별지역 지정 모델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이양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1단계)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관할 시·도의 권한 이양 신청
 - (2단계) 권한 이양 여부에 대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

- (3단계) 권한 이양 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
- (4단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 특별지역 지정 모델도 금융중심지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별지역 지정 모델의 제도화를 위한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음

〈표 II-14〉 특별지역 지정 모델 개정안

제00조(권한 이양의 신청) ① 금융중심지 또는 금융특구의 조성과 발전을 위해 금융중심지 또는 금융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이양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지역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심의하고 권한이양의 범위 등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한이양을 승인받은 시·도는 이양받을 사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이양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이양계획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 위 규정 이외에도 우선 이양이 불가능한 사무의 범위 및 기타 특례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할 필요가 있음

Ⅲ. 소규모 금융회사 등의 유치를 위한 금융중심지 등록 위탁방안 검토

Ⅲ. 소규모 금융회사 등의 유치를 위한 금융중심지에 등록 위탁방안 검토

1. 전제 고려사항

- 현행 금융중심지법만으로는 이하의 방안이 가능하지 않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함
 - 금융특구로 설정하고 특구법 내지 특별법 등의 직접적이고 과감한 특례적용이 없고, 지역특구법상 규제샌드박스의 적용이 제한되어 금융중심지 발전방안의 추진동력이 미약하기 때문임
- 따라서 이하의 내용은 금융특구법 또는 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해당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특례가 가능한 법률적 제반 여건을 전제로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금융회사의 경우 서울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서울에 본부 및 관련 업무조직을 집중화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대부분 금융중개기능이 서울에 집중화되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역 거점과 크게 상관관계 없는 금융회사를 부산에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전혀 없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음
- 금융중심지 내지 금융특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규제상 혜택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대표적으로 인가 및 규제준수 비용 절감을 들 수 있음. 그 외 특구 내에서 인정된 기업의 경우 다른 지역 내지 다른 국가에 진입시 접근과 정보제공 및 규제상 우호적 취급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기관간 협력과 공조가 법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 한편, 부산에 소재한 금융회사들의 육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해 타 지역 대비 경쟁력 있는 금융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부산지역과 타지역의 금융소비자를 흡수하여 발전을 이끌게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략적으로 소규모 금융회사를 타겟으로 하여 금융규제 진입 강도가 크지 않은 금융회사를 부산에 유치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진입규제 강도가 낮은 경우 금융중심지에서 관할한다고 할 때 관할감독기관 내지 다른 지역의 저항이 적을 수 있다는 점,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요청이 상대적으로 저감되는 점 등의 이점이 있음
 - 한편, 소규모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전속 관할감독기관이 감독법상 별도로 있는 점, 상대적으로 소비자보호 이슈가 크지 않다고 해도 소비자보호 우려는 여전히 있는 점 등의 이슈는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는 방법으로서 정부의 업무위탁을 받아 금융중심지에서 관할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이처럼 부산금융중심지에서 일정 지역거점형 소규모 금융회사 진입규제를 관할하는 경우 ① 행정기관의 사무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감독행정기관의 방대화를 억제하는 한편, ② 행정규제와 감독업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③ 부산금융지의 특성을 고려한 감독과 지도역량을 발휘하며, 신속하게 처리하는 이점이 있음
 - 다만 금융규제의 본연의 역할을 고려할 때 부산에 거점을 둔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진입규제를 위탁/위임하는 것은 새로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점에서 우선 진입규제강도가 낮은 등록제를 취하는 소규모 금융회사를 우선 고려해볼 수 있음
 - 등록제를 취하는 경우에도 자본금이 높은 경우는 규제비용이 커서 소규모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음
 - 대표적으로 신기술금융업은 금융위원회 허가가 아닌 등록사항으로 되어 있으나(동법 제3조) 여전법에서 요구되는 신기술금융사 등록요건은 자본금이 100억원임(동법 제5조). 더구나 최근 신기술금융사 등록 자본금요건이 2016년 기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이를 충족하면 쉽게 등록이 됨에 따라 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같은 여전법 내에서 전문인력, 물적시설, 대주주요건을 요구하는 신용카드업수준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재 높은 금융업 진입장벽으로 인해 특화 금융회사가 한국에는 많지 않은 상황임
 - 금융업 진입규제는 크게 인가와 등록으로 구분. 인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며, 예금자(투자자)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필요성 등이 큰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공모)자산운용업, 신용카드업, 저축은행업 등이 해당됨. 등록은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며, 요건을 갖추어 신청만 하면 영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인가와 달리 재량의 여지가 적으며, 투자자 등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낮은 (사모)자산운용업, 자문·일임업, 할부·리스업 등이 해당됨
 - 특히 2019년 1월 15일, 자본시장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경우 시장진입(등록)을 위한 자기자본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되었고, 등록 후 유지요건으로 자기자본 최소기준도 14억원에서 7억원으로 완화됨.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일임업자의 자본요건은 종래 13억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됨. 다만 자기자본 미달시 퇴출요건을 강화되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일임업자에 대한 자기자본 충족 등 유지요건을 준수하는지 판단하는 주기는 기존 1년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퇴출유예기간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됨⁶⁾
 - 이처럼 업무범위를 의미하는 인가단위와 등록단위가 존재하며 업무의 종류, 투자상품 및 투자자(영업의 대상)에 따라 인가·등록단위가 구분됨. 아울러 단위별로 인가·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인가단위별로 자본금요건 등이 달라지는 만큼 인가단위는 진입장벽의 높이를 결정함
 - 인가관련 법령 등은 금융회사 본인과 금융회사 대주주(최대주주, 주요주주 등)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함. 금융회사는 법정 최소자본금, 인적·물적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갖추어야 하며, 대주주는 재무건전성요건과 사회적 신용요건(금융관련 법령 위반, 채무불이행,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였는지 등)을 심사함
 - 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우 인가제로 운용되고 있어 해외 주요국에 비해 진입규제가 복잡하다고 할 수 있음

6)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19099

- 즉 새로운 아이디어로 금융업에 진입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금융회사의 출현이 어려운 환경임
 -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되는 제도도 2016년 4월부터 시행되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낮은 측면이 있음
- 그러나 2018년 5월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다양한 방안을 발표하였음
 - 특히 금융투자업분야에서 모험자본 공급활성화, 금융투자업 성장사다리 강화 등을 위해 업무의 성격과 위험도를 감안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중개전문증권사 설립촉진 (중소·벤처기업 등의 다양한 모험자본 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비상장주식/코스닥·코넥스/사모증권·펀드지분 등), 이들 특화 증권사에 대해 투자중개업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을 대폭 완화(예: 30억원에서 15억원 이하)하고 장기적으로 NCR 등 일반 증권회사에 적용되는 규제도 선별적으로 적용받도록 하여 규제 준수비용을 절감하도록 함
 - 그 외 1인 투자자문사 등 설립도 촉진할 것임을 발표. 2017년말 기준 179개의 자문사가 영업하고 있으나 개인에 대한 자문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평가로, 진입규제를 간소화·완화하여 1인 투자자문회사 설립 확대 등을 통해 자문·일임업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 이를 통해 자문업→일임업→사모운용업→자산운용업으로 이어지는 금융투자분야 창업성장사다리 구축에 기여한다는 계획임
 - 2023년 2월에는 금융위가 은행업 경쟁촉진 차원에서 스펙라이센스·챌린저뱅크등 은행권 진입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함. 다만 과거에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만 대출하는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등 특화은행도 과거 출범한 적이 있으나(부산·대구 등 중소기업 전담은행으로 출범한 동남은행, 대동은행이 대표적)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퇴출된 이후 부정적이었고, 올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와 시그니처은행의 폐쇄로 은행산업 관련 스펙라이센스(특화전문은행)의 도입은 소극적임
- 이처럼 국내 금융업중 규제강도가 가장 낮은 업종은 투자자문업이고 국내 규제체계에서 스펙라이센스제도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점에서 금융중심지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규제강도가 낮으나 금융소비자와 금융안정이슈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인 투자자문업분야에 초점을 두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투자자문업은 외국과 비교해 그 수나 이용이 활발하다고 볼 수 없고, 독립자문업자의 수는 전무한 실정임
- 투자자문업이 부산금융중심지에서 활성화될 경우 이는 소규모 라이선스 도입의 영향으로 다른 금융업분야, 예컨대 소규모 지급결제기관, 소규모 소매신용산업까지 부산금융중심지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없지 않음
- 그간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향후 특화 소규모 금융회사가 다수 설립될 가능성이 큼
- 특히 2019년 자산운용시장(전문사모, 일임, 자문) 진입요건의 완화로 인하여 이에 따른 감독행정사무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전망에 따를 경우 두가지 방안을 부산금융중심지에서 추진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음. ①하나는 특구법 내지 특별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소규모 금융사에 대한 등록규제를 담당하는 방안이고, ②다른 하나는 부산거점 소규모 특화 금융회사의 경우 특구법 내지 특별법에 근거해 부산금융중심지에 진입규제 관련한 감독업무위탁을 받는 방안이 그것임
 - ①의 방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검사와 제재권은 금융감독기관이 갖고 있으며, ②의 경우에도 업무위탁을 감독기관이 취소할 수 있음
- 이처럼 등록절차만 단순히 위탁하는 것에 그칠지, 아니면 등록과 검사권까지 보유하는지는 금융중심지위원회의 법적 권한과 지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해외 사례 분석

가. 두바이

- 펀드 상호인정(fund passporting)
 - 펀드의 경우 UAE 내 세 개 관할에서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음. 하나는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DIFC), Abu Dhabi Global Market(ADGM), 그리고 나머지가 그것임
 - 그런데 한 지역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경우 판매와 마케팅이 제한되고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2018년 세 개 관할기관이 합의하여 한 개 기관에서 라이선

- 스를 받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DFSA, Consultation Paper No.123 on 'Fund Protocol Rules', 2018. 11.27). 이를 '상호인정'이라고 부름
- UAE에는 금융자유지역(financial free zones)을 관할하는 감독기관이 2개 있음. 그중의 하나가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DIFC)를 관할하는 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DFSA)이고, 다른 하나는 Abu Dhabi Global Market (ADGM)을 관할하는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Authority (FSRA)임
 - 상호인정의 방안으로 DFSA가 감독규정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공모펀드의 경우 ① 상호인정을 득하기 전 증권선물감독청(Securities & Commodity Authority)의 규제를 받는 custodian을 설치할 것, ② 상호인정을 받는 펀드의 경우 지정된 면책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③상호인정을 받는 펀드의 경우 영어와 아랍어로 핵심 투자자정보서류(KIID, key investor information document)를 제공하여야 하는 등 추가적인 투자자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특징은 공모펀드가 아닌 한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점임.
 - 아울러 SCA나 FSRA는 언제라도 DIFC 펀드에 대한 현장검사권을 가지며, SCA 또는 FSRA와의 합의 여하에 따라 SCA 또는 ADGM이 규율하는 펀드매니저에 대한 제재권을 가질 수도 있음⁷⁾
 - DFSA는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지역의 선도적 금융허브의 위치를 갖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집합투자펀드들이 DIFC에 설립되는 경향을 보임. Dubai Law NOI 9와 12에 의거해 DIFC의 금융 및 행정상의 독립성을 보장받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자유지역으로 독립적인 금융규제감독기관과 사법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적극적인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음
 - DIFC는 이러한 이점 및 펀드 설립지로서의 매력을 높이고 EU와 대등한 법적 규제적 탄력성을 제공하는 국제금융센터로서 펀드의 운영과 탄력성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 DIFC, ADGM, UAE 각각에서 설립된 펀드들은 간단한 등록절차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도 판매가 가능함. 이는 금융자유지역과 UAE간에 펀드마케팅에 관한 패스पोर्ट를 인정한 첫 번째 시도로 DIFC 펀드 매니저들이 UAE와 ADGM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7)

<https://www.morganlewis.com/pubs/2018/12/difc-funds-regime-introduces-changes-to-improve-flexibility-clarity>

□ 투자자문업

- 두바이에서 투자자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선물감독청(Securities & Commodity Authority)의 승인(approval)을 받아야 함

나.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1960년대부터 세계적인 국제금융센터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금융인프라 확충 및 개선을 통해 세계적인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유명
- 1997년부터 국제금융센터 구축을 위한 개혁의 하나로 자산운용시장의 육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세계상의 우대 및 금융전문인재의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음
- 아울러 당시 중국의 경제성장에 수반하여 주식시장이 급팽창하였으나 외환거래규제 및 투자에 제약이 많음을 기회로 보고 싱가포르정부는 이른바 springboard 전략을 채택, 중국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중국의 지방정부와 MOU를 체결하여 북경에 주재원 사무소를 개설, 중국기업의 싱가포르 거래소 상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한편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대중국 투자창구로서 역할을 함⁸⁾
- 한편, 싱가포르는 국내 금융시장과 역외시장을 분리하는 형태로 구축해옴. 이를 통해 1990년 세계에서 네번째로 큰 외환시장을 보유하게 됨
- 현재 싱가포르는 미·중 분쟁, 코로나 봉쇄 등 홍콩의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후 홍콩을 대체하는 금융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고, 동남아 핀테크 핵심지역으로 동남아 핀테크업체의 약 40%가 싱가포르에 위치(2020년 기준)하고 있음⁹⁾

8) 한정미·안수현, 싱가포르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비교법제 연구 12-20-⑤, 한국법제연구원, 2012년, 31면 이하

9)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싱가포르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발간, 2022. 6.24 보도자료

- 싱가포르의 경우 도처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기술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스마트 금융센터로 성장하여 가치창출 및 효율향상, 리스크관리, 새로운 기회의 창출 통해 싱가포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음. 이에 따라 싱가포르 통화청인 MAS는 싱가포르를 스마트 금융센터로 탈바꿈할 수 있는 핵심요인은 혁신적인 기술 활용을 도울 규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봄. 이에 따라 빠르게 금융기술 즉 핀테크를 활용한 최근의 금융서비스가 복잡해지는 반면, 혁신이 현 규제조건을 상충할 수 있음을 고려함과 동시에 핀테크 생태계에 활력을 주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핀테크 테스트를 권장하고 있음. 아울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등이 규제샌드박스에 참가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테스트 하게 함
- 싱가포르의 자본시장은 증권시장인 증권거래소(SGX, Singapore Exchange)와 파생상품시장, 채권시장 등으로 구성됨
 - 증권시장은 증권거래소(SGX)가 있고 그 산하에 Mainboard, Catalist, SGX ETFs시장을 두고 있음. Mainboard는 우량기업의 위주의 시장으로 (456개 기업 상장) 상장하려는 회사는 감독기관인 MAS에 투자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Catalist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위주의 시장이며(217개 기업상장), SGX ETFs시장에서는 36개의 ETF가 상장되어 있음

〈표 III-1〉 SGX 산하 증권거래소 현황

(기준 : 2022년 1월, 단위 : 개, SGD 억 달러)

시장구분	기업수	시가총액	비고
Main Board	456	8,848	상장 요건은 다음 3가지 중 1가지 충족 필수 1) 최소 3년간 운영실적 및 최근연도 연결 세전이익이 최소 SGD 3천만 달러 이상 2) 최소 3년간 운영실적 및 최근연도에 흑자기록, 시가총액 SGD 1억5천만 달러 이상 3) 최근 연도의 영업수익 및 시가총액 SGD 3억 달러 이상
Catalist	217	113	최근 급성장하는 기업을 위한 창구이며, Full Sponsor가 상장 여부를 결정
ETFs	36	-	2022년 1월 한달 동안 1억 6,600만개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은 총 SGD 4억 달러

*출처: 금융중심지지원센터, 2022년, 20면

○ 파생상품시장은 장내파생상품시장인 SGX 내 파생상품시장과 장외파생상품시장, 그리고 암호자산 파생상품시장이 있음. 2019년 10월 증권선물법에 따라 암호자산 파생상품거래가 허용됨

□ 싱가포르 은행은 2021년 기준으로 총 155개의 예금취급기관 (Deposit-Taking Institutions)이 있으며, 상업은행 131개, 종합금융회사 (Merchant Bank) 21개, 일반금융회사 3개가 있음. 싱가포르의 경우 모든 상업은행은 유니버설뱅크 업무를 수행

○ 싱가포르 현지은행으로는 DBS, OCBC Bank, UOB가 있음

○ 디지털은행은 2020년 12월 현재 4곳(디지털종합은행이 2개, 디지털도매은행이 2개)이 2022년 영업을 개시할 예정임

○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은행법(Banking Act)에 따라 MAS로부터 은행업 인허가를 받아야 함. 자본금 및 자본기금(Capital Funds)¹⁰⁾은 각 SGD 15억 달러 이상이어야 함

○ 인허가 심사기준으로 신청회사 및 모회사(또는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실적, 국제적인 평가 및 평판과, 본국 감독당국의 감독강도 및 MAS와의 협력의사·협업능력, 은행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과적 전략,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한 리스크관리체계 및 절차 등이 있음

○ 통상 신청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허가심사가 완료됨

10) 싱가포르 은행법 제2조에 의하면, 자본기금은 다음을 의미함. ① 싱가포르에 설립된 은행의 경우 총자본금(자기주식 제외) 및 공시된 유보금(MAS가 서면으로 특정하여 통지한 유보금 제외)의 합계에서 은행의 계정에 나타난 손실을 공제한 것, ② 싱가포르 외에 설립된 은행 또는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본시 자본금 및 MAS가 서면으로 특정하여 통지한 다른 부채의 합계, ③ 싱가포르에 설립된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총 자본금(자기주식 제외) 및 공시된 유보금(MAS가 서면으로 특정하여 통지한 유보금 제외)의 합계에서 종합금융회사의 계정에 나타난 손실을 공제한 것을 말함

〈표 III-2〉 싱가포르 예금취급기관 유형

(2021년 12월 기준)

유형		개수	주요은행	
상 업 보 안 금 회 사	현지은행 (Local Bank)	4	DBS, OCBC, UOB, BOS	
	외국계 은행	종합은행 (Full Bank)	30	JP Morgan Chase, MUFG, SC 등
		도매은행 (Wholesale Bank)	97	ABN Amro, Barclays 등 ※ 국내진출은행(하나, 우리, 신한, 산업, 국민('22년 예정))
종합금융회사 (Merchant Bank)		21	Daiwa, JP Morgan 등	
일반금융회사 (Finance Company)		3	HLF, Sing Investment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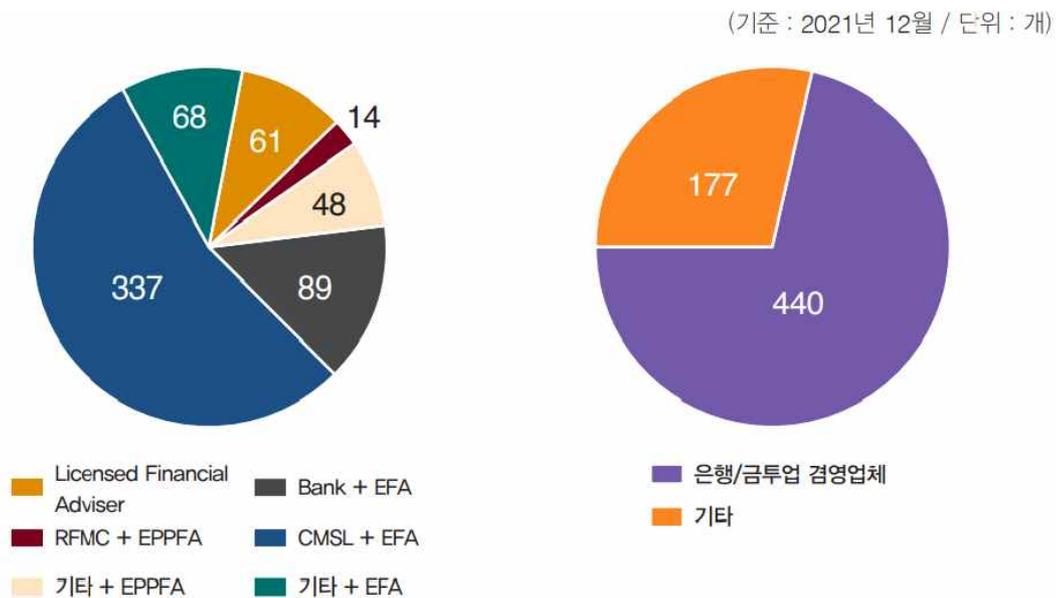
*출처: 금융중심지지원센터, 2022년, 25면

-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업법 (Insurance Act)에 따라 MAS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인허가 검토 및 승인기준으로 보험료, 자산등 국내외 순위, 국제신용평가기관 (S&P, AM Best, Moody's, Fitch 등)의 과거와 현재 신용등급, 국내 규정준수여부 및 과거 재정건전성, 평간 및 평가(MAS는 신청기업 국가의 감독당국과 협의), 상품혁신성, 판매유통 채널 등의 전문성, 리스크 프로파일이 반영된 비즈니스 전략 및 세부계획, 비즈니스의 규모와 복잡성에 상응하는 리스크관리시스템 및 프로세스, 주요임원, 실질적 주주, 라이선스 실질지배력을 가진 모든 사람의 적합성 등을 심사
 - 자본금요건은 일반보험사 SGD 1천만 달러, 상해보험 및 단기상품보험판매는 SGD 5백만달러, 재보험사는 SGD 2천 5백만달러, 종속(캡티브)보험사는 SGD 40만달러임
 -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제출서류가 완벽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6~8주 이내에 허가심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음
- 자본시장 참여자 (자본시장서비스라이선스사업자, 투자자문사 등) 현황 (2023.3. 기준)¹¹⁾

- 자본시장서비스라이센스취득자 수(Capital Markets Services Licensee): 1130
- 금융자문인 수: 64
- 시장운영자(Recognised Market Operator) 수 : 72
- 펀드매니저 (Recognised Fund Management Company) 수: 287

□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12월 현재 싱가포르 금융자문업 인가업체수는 617개로, 전문금융자문업자가 61개, 적격투자자 금융자문업자가 62개, 금융자문업 면제자는 494개(금융업무인가 보유)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III-1> 싱가포르 금융자문업 인가업체 현황



- 금융자문업만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며 대부분 다른 금융서비스 본업과 함께 금융자문서비스 제공

11) <https://eservices.mas.gov.sg/fid/institution>

□ 금융자문업자

- 금융자문업의 정의: 일반대중 또는 그 구성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자문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권유할 의도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
- 업무범위: (i) 금융상품에 관하여 대면 또는 서면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 (ii) 리서치분석 및 보고서 발행·배포하는 방식으로 투자상품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 (iii) 생명보험계약 설계 업무 (재보험 제외)
- 주요 금융자문업자로 (i)전문금융자문업자(Licensed Financial Adviser), (ii) 적격투자자 금융자문업자 (Exempt Person Providing Financial Advisory Services), (iii) 금융자문업 면제자(Exempt Financial Adviser) 등이 있음
- 전문금융자문업자는 주로 생명보험업자들이 보유하고 있음. 이에는 AIA Financial Advisers, Great Eastern Financial Advisers, Manulife Financial Advisers, Singlife Financial Advisers 등이 있음
- 적격투자자 금융자문업자는 30인 이하의 적격투자자에게 투자상품 관련 자문 및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주요회사로 CCB Porfolio Construct, Excalibur Investment Advisers 등이 있음
- 금융자문업 면제자는 금융자문업 인가를 보유한 전체 회사중 대략 80%가 금융자문업 면제를 통해 해당 인가를 보유함. 이에는 은행으로 Bank of China, Barclays, DBS Bank등이 있으며, 증권사로는 JP Morgan Securities, OCBC Securities 등이 있고, 운용사로는 대표적으로 Amundi Singapore, Blackstone Singapore 등이 있음
- 금융자문업자에 대하여 2022년부터 민원 관리 및 해소에 관한 규정이 시행 되어 금융자문업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야 함. (i) 소매고객을 위한 독립적인 민원관리 프로세스 적시 제공, (ii) 관련 규정에 대한 준수를 책임지는 고위관리자 선임, (iii) 민원관리 프로세스에 대해 대중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채널 구축 (iv) 민원관리에 대한 중앙집중시스템 구성, (v) MAS에 민원관리 현황에 대해 연 2회 보고
- 금융자문업자들이 최근 로보어드바이저리 서비스를 확대함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다음 요건 충족시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서비스 활성화 및 성장을 독려하고 있음. 이에는 (i) 이사회와 경영진의 자산 운용관련 경력 기준 충족, (ii) 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집합투자상품에 관한 포트폴리오 서비스 제공, (iii) 영업 첫째 말 외부감사 실시 등이 해당함

- 싱가포르 자산운용업은 AUM의 78%가 싱가포르 외부에서 조달(2020년 기준)되는 것이 특징이고, 부동산투자신탁(REITs)은 시가총액 SGD 1,105억 달러로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이며, SGX 시가총액의 12%를 차지하고 있고 국제적인 REITs시장의 허브로 성장함
 - 특히 싱가포르는 VCC라는 투자펀드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법인구조를 허용하여 투자펀드를 육성하고 있음. VCC(Variable Capital Companies)는 펀드 운용회사의 설립 및 운영비용 조건을 낮추고, 주주총회 개최와 재무제표 공개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혜택을 줌으로써 헛지펀드, 사모펀드 등 다양한 투자전략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싱가포르 정부는 VCC 투자펀드 육성을 통해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20년 출범이후 2년 동안 500여개의 VCC들이 설립되었고, 2035년까지 7,000여개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됨¹²⁾
- 싱가포르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2021년 12월 기준으로 251개의 증권사, 801개의 자산운용사 및 벤처캐피탈펀드, 그 외 181개의 금융서비스업체들이 존재. 싱가포르에 존재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싱가포르 국영 투자회사(GIC, MAS)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외국계 기관투자자에 해당함¹³⁾
- 싱가포르에서 특히 핀테크는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2020년 기준 싱가포르의 핀테크기업은 1,000여개 기업으로 종사자도 1만명을 넘어섬¹⁴⁾
 - 특히 핀테크중 블록체임과 암호자산이 주목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글로벌 블록체인 사업자로 블록체인 데이터플랫폼 Chainalysis 및 암호자산거래소 Gemini가 싱가포르에 진출함

12)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싱가포르 금융감독업, 2022년, 45면.

13)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싱가포르 금융감독업, 2022년, 47면.

14) KOTRA, 2021년 싱가포르 금융산업정보, 2021.12.2.

(https://www.kiep.go.kr/aif/businessDetail.es?brdctNo=322978&mid=a304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03010600&search_area=¤tPage=3&pageCnt=10)

〈그림 III-2〉 싱가포르 핀테크 환경



출처: 핀테크지원센터, 한눈에 보는 규제샌드박스 IN 싱가포르, 2021.11.26.15)

- 싱가포르의 금융규제샌드박스는 MAS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샌드박스 와 샌드박스 익스프레스(간소화)절차로 이원화되어 운영중임. 샌드박스 가이드라인은 2016.11에 발표되었으며, 샌드박스 익스프레스는 2020.11월에 발표함
 - 샌드박스제도는 보다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신청자에게 규제완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심사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신청자는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 제한이 없음. 대상은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거나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금융서비스와 상품이 되며, 심사기준은 (i) 기술이 혁신적인지 또는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지 (ii) 소비자 또는 산업에 이익이 되는지, (iii) 샌드박스 종료후 싱가포르 내에서 더 큰 규모로 서비스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iv) 시나리오 및 예상결과가 명확한지, (v) 테스트범위(이용자수, 거래한도 등)가 적절한지, (vi) 중대한 위험이 평가되고 완화되는지, (vii) 명확한 출구 및 전환전략이 있는지 등이 해당됨. 사전심사기간은 21일 이내나 본심사기간은 제한이 없음(신청서의 완전성 및 규제 복잡성 등에 좌우됨). 냉각기간도 있는데, 승인거절시 3개월후 재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테스트는 신청 사례별로 기간을 결정하고, 연장도 가능함. 사후관리조치로는 MAS와의 합의된 일정에 따른 진행상황을

15) https://sandbox.fintech.or.kr/support/notice_detail.do?lang=ko&id=1257&pageIndex=1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며, 예상목표를 달성하고 신청자가 관련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경우 더 큰 규모로 서비스가 가능한 반면 실패시(법률 미준수, 서비스 이익보다 큰 결함 발견, 부가조건 위반 등)에는 샌드박스를 중지함

〈그림 Ⅲ-3〉 샌드박스 참여시 법·규제 요건 완화/유지 예시¹⁶⁾

“유지” 요건의 예
기밀 고객 정보
정직성과 성실성에 방점을 둔 적절한 기준
고객의 자금과 자산은 금융 기관을 통해 처리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지원 금지

“완화 가능” 요건의 예
자산 유지 요건
이사회 구성
현금 잔액
신용 등급
재무 건전성
자금 상환 능력 및 자기 자본 비율
라이선스 비용
관리 경험
기술 위험 관리 지침, 아웃소싱 지침 등 MAS 지침
최소 유동 자산
최소 납입 자본
상대적 규모
평판
실적

- 샌드박스 익스프레스는 MAS에 의해 규제되는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시장에서 금융서비스 및 상품의 혁신을 가속화하며 동시에 신청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즉 사전에 정

16) Kotra, 싱가포르 핀테크 규제 및 진출가이드, Global Market Report 19-105 2019. 2.

의된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이 낮은 비즈니스 모델에 신속한 테스트,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제도가 마련됨. (i) 각 테스트의 위험이 낮아야 하며, 쉽게 이해가능하여야 함. (ii) 신청자는 관련 허가 승인이나 면제조건을 완전히 준수해야 하고, 참여자에게 법정된 중요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iii)테스트 종료후 테스트과정 및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¹⁷⁾. 익스프레스는 기존 샌드박스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신속한 심사를 하며, 신청자는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 제한이 없음. 현재 보험중개(조건: 중개업무종류, 보험계약 건수한도, 보험료 수령금지등)와 거래플랫폼(Recognised Market Operator, RMO)¹⁸⁾(조건: 누적 거래량 한도, 고객범위 제한, 자기계약 금지등)이 대상이며, 심사기준은 다음의 두가지 기준에 의함. (i) 신청자의 주요이해관계인이 적합한지, (ii)기술이 혁신적인지, 기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혜택을 주는지 등이 그것임.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며, 승인 거절시 3개월 후에 재신청이 가능. 서비스테스트 기간은 9개월 이내로 연장이 가능함. 사후관리로 승인기간 개시후 2개월 마다 경과보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며, 승인기간 종료시 최종보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됨. 종료시 신청자는 다음 2가지중 하나를 이행하여야 함. (i) 승인기간 종료 주전까지 보험중개업 등록신청서·거래플랫폼 인정신청서를 제출, (ii) 승인기간 종료 6주 전까지 업무를 계속 영위할 의사가 없음을 통화청에 통지

-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샌드박스외 익스프레스에 동시에 또는 각각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또한 한쪽에서 거부된 경우 냉각기간 동안 다른 샌드박스에 신청이 불가함

□ 그 외 싱가포르 MAS는 2015년부터 금융부문기술 및 혁신 계획(Financial Sector Technology and Innovation on Scheme, "FTSI")을 수립해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혁신을 위한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

- 금융부문 기술 및 혁신계획(FTSI)은 상세분야로 이노베이션센터, 기관차원의 프로젝트 진행, 산업 전반의 기술인프라로 나뉘어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17) 이진수, 대만·싱가포르의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제도 분석 및 시사점, 이슈페이퍼 20-19-①-2, 한국법제연구원, 2019, 30면.

18) 조건으로 누적 거래량 한도, 고객범위 제한, 자기계약 금지등이 마련되어 있음. 거래플랫폼은 증권선물법(Securities and Futures Act) 적용대상이며, 최초에는 송금업무 포함 3개 분야였으나 결제서비스(Payment Service Act 2019) 시행에 따라 송금업무는 제외됨

- 이노베이션센터는 혁신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시장솔루션을 출시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혁신센터 또는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지원하며, 해외 금융회사를 유치하는 목적을 갖고 있음
- 기관차원의 프로젝트는 성장성, 경쟁력이 있는 창의적 서비스를 개발한 경우 지원하며, 싱가포르 기반 금융회사가 자사 및 해당 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시장 솔루션을 촉진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 아울러 산업프로젝트는 타 산업간의 융합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 지원하며, 산업전반의 프로젝트트랙을 통해 금융서비스 부문에서의 산업전반의 기술과 유틸리티 인프라를 구축하고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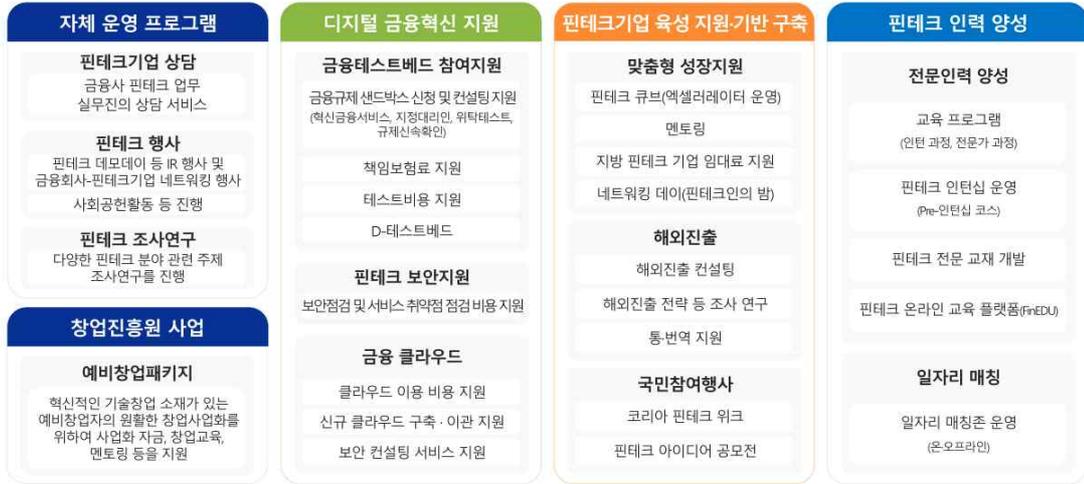
4. 소규모 금융회사 등록의 금융중심지 위탁방안

-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규제환경중 핵심적인 조건중의 하나로 대표적으로 금융시장 참가 플레이어들의 혁신을 지원하는 신속한 규제지원체계 구축을 들 수 있음
- 이를 위해 각국은 (i)규제자와 혁신자간의 협력 체계 육성, (ii) 규제샌드박스제도 운영 및 기타 보조금등 지원제도 마련, (iii) 핀테크 브릿지 운영 (iv) 스플라이센스체계 구축 등을 시행하는 경향이 있음
 - 규제자와 혁신자의 협력체계 육성방안의 하나로 싱가포르의 경우 FinTech Innovation Lab 등을 운영하여 규제자가 혁신자와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2015. 3월 금감원, 유관기관 공공의 민관합동 TF형태의 핀테크지원센터로 운영되다가 2018년 1월 상설사담법인으로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설립됨.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산업 혁신성장 활성화 지원, 핀테크 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글로벌 핀테크 허브를 위한 전략 실천 및 효과적인 경영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¹⁹⁾.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와 스케일업을 통해 금융혁신 및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음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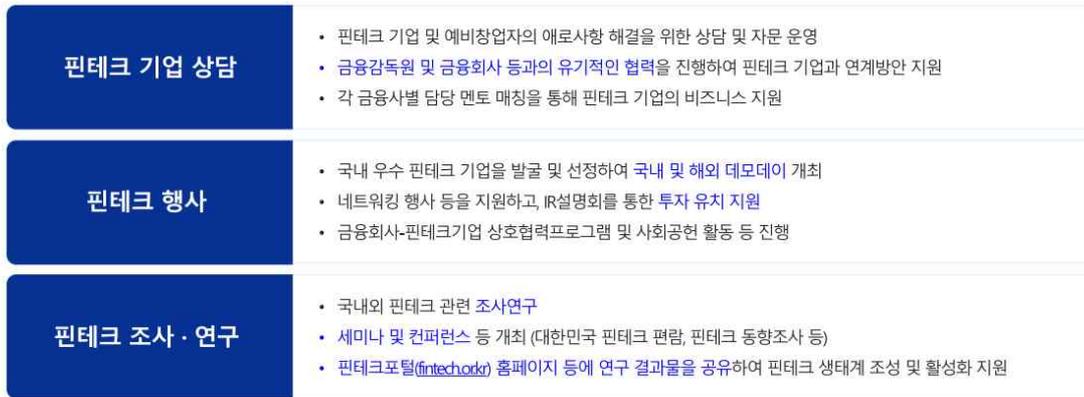
https://fintech.or.kr/web/intropage/intropageShow.do?page_id=a1d8c1007f554a188474b80c6d544542&menu_id=8200

〈그림 III-4〉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주요 기능



출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그림 III-5〉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자체 운영 프로그램



출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그림 III-6〉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디지털 금융혁신지원 업무



출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 핀테크 브릿지(fintech bridge)는 정부가 다른 국가의 관할 기관과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통해 핀테크기업과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시장에 진출하여 성장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함. 이들 방안에는 감독기관간의 간담회, 정보 공유, 규제절차 간소화, 공동연구, 새로운 기술과 방안에 대한 발전방안 공동모색 등이 포함됨
- 아울러 국내에서도 금융혁신특별법 제정에 근거한 규제샌드박스제도를 통해 핀테크기업은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테스트베드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테스트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됨. 즉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사업고도화를 지원하기위하여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테스트에 필요한 물적 설비 또는 인력 운영 등 테스트비용을 지원함. 1.2억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최대 75% 수준을 보조금으로 지원함.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책임보험료도 지원함. 즉 테스트 베드 참여기업중 책임보험을 가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적정성을 평가한 후 책임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금액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 수준을 보조금을 지원함²⁰⁾
- 국내에서 규제샌드박스 운영성과는 2021년 규제샌드박스의 원조인 영국의 경우 200여건의 추진실적을 보인 반면에 같은 해 우리나라는 총 410건의 추진

20)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센터소개자료,

https://fintech.or.kr/web/intropage/intropageShow.do?page_id=a1d8c1007f554a188474b80c6d544542&menu_id=8200

- 실적(금융 분야 외 포함)을 보이는 등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는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양적 성과가 질적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
-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진정한 운영성과는 제도 적용이 종료된 이후의 사후관리에서 좌우되며, 규제샌드박스의 적용과 실증테스트 수행이 규제정비로 이어져야 함. 아울러 규제샌드박스제도가 지속적으로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지속적인 수요가 전제되어야 함. 따라서 사전적인 수요관리차원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혁신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촉진활동이 필요함
 - 사전적인 수요관리방안으로 (i) 민간 뿐 아니라 공기업 등 공공기관도 직접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하는 비중을 확대시켜 지속적인 규제혁신의 아이디어를 제공하여야 함
 - 그 외 규제샌드박스제도의 발전방안으로 (ii) 다양한 주체를 통한 협력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됨.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 외에 해당 혁신기술이나 사업모델의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공공부문 주체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음²¹⁾
- 무엇보다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환경 정비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방안의 하나로 금융중심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즉 규제자와 혁신자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금융자문업, 핀테크기업과 같이 소규모 금융회사의 등록과 같은 업무를 금융중심지에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진입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점, 더구나 스몰라이센스가 활발하게 인정될 경우 설립건수는 많은데 비해 검사·감독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점, 검사·감독의 효율·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율규제기관을 활용하는 점에서 규제 진입시에도 위탁을 통해 효율·효과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예컨대, 투자자문업·일임업의 경우 등록제로 운영되는데, 투자자문업 등록시 1억원 또는 2억 5천만원의 최저자본이 필요함. 투자일임업의 경우 전문투자자 대상시 5억원, 일반투자자 대상시 15억원이 소요됨.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은 2개월로 심사기준은 (i)자기자본요건 충족 여부(등록업무 단위별로 자본

21) 이민호,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발전방향과 공공기관의 역할, 공공경제 2021, Vol. 08, 21면 (www.kipf.re.kr)

시장법 시행령 별표 3)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ii) 인력 요건 충족 여부 (등록업무 단위별로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을 갖출 것), (iii) 임원이 법령이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을 것, (iv)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v)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등을 요함(자본시장법 제18조,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2조)

○ 그런데 최근 등록절차 기간이 약 8~9개월이 소요되는 등 오래 지연되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 투자자문사 설립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역외펀드, 전문사모펀드, 유사투자자문, 공모펀드 등 관련 신청건수는 많은데 비해 등록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감독기관의 심사는 매우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²²⁾

○ 한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등록의 직권말소제도가 도입되어 일정기간 자기자본한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인력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투자자문·일임·일반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말소가 가능함

○ 따라서 진입 및 감독상의 운영효율화를 뒷받침하고 금융중심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의 하나로 현재 금융위원회가 등록·인가 등에 대한 진입 규제권한중 소규모 회사의 등록업무 위탁을 금융중심지에 위탁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음

□ 금융중심지법 제6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대상은 8개의 법정사항과 1개의 임의사항으로 구분되며, 금융중심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심의대상은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비롯하여 금융중심지정책 추진 및 실행에 관한 주요 사항이 되는바, 부산금융중심지 발전방향의 일환으로 부산거점형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부산금융중심지에서 진입관련 규제를 업무위탁의 일환으로 하는 것을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도 시도해볼 수 있음

○ 현재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는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를 포함하여 5개 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안전을 심의하고 의결하나, 이는 제안에 그치고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관계에 있음

22) 연합인포맥스, '등록하세월' 급증하는 투자자문사.. 당국 "요건 안되면 퇴출도 쉬어", 2021.11.5.

- 한편, 등록업무를 위탁받더라도 금융중심지는 수탁기관으로서 위탁업무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핀테크 브릿지와 같은 제도의 운영이 부산금융중심지위원회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간 포함)에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즉 핀테크 브릿지는 통상 정부가 다른 국가의 관할 기관과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통해 핀테크기업과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시장에 진출하여 성장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들 방안에는 감독기관간의 간담회, 정보 공유, 규제절차 간소화, 공동연구, 새로운 기술과 방안에 대한 발전방안 공동모색 등이 포함됨
 - 부산을 거점으로 한 금융업자의 경우 중앙에서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경우 부산금융중심지에도 그 정보가 제공되어 부산금융중심지에서 지원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부산특구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심사에도 중앙 관련 감독기관이 처음부터 참여하여 충분한 인식이 상호 교감될 필요가 있음
 - 이는 규제감독자간의 상호 이해는 물론 규제자와 피규제자 내지 혁신을 추구하는 민간과의 상호 이해를 높여 협력과 혁신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는데 기여할 것임

IV. 금융중심지 관련 특례 법제의 체계화 방안

IV. 금융중심지 관련 특례 법제의 체계화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와 입법 현황

- 2007년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부가가치가 높고 관련 서비스업 및 실물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금융거래 중심지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었음
-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걸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조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구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금융중심지 구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법 목표가 제시된 바 있음
 - 법 제5조에서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에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설치, 제7조 및 제9조에서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금융혁신의 촉진, 제10조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제13조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금융시장의 활성화와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음

나. 현행 입법의 문제점과 한계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최소한의 형식적 조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금융중심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기구 설치, 금융회사 및 그 종사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금융중심지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현행법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인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7년 제정되었음

- 금융중심지법 제6조제1항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권한은 심의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금융중심지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나,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을 실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의결권한이 아닌 심의권한만을 부여한 것임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은 금융산업 및 금융규제 분야 뿐만 아니라 주거지, 교육, 의료 등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 등과도 연계된 사항으로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함
 - 법에서 정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권한은 안전에 대한 심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에 대한 의결에 이르나, 안전에 대한 최종결정권한은 현행 법률상 금융위원회에 있음
- 금융중심지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과 부산 2개 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있음
 - 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가는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금융회사의 서울 지역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서울에 본부 및 관련 업무조직을 집중화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바, 이는 제도적 기반의 부재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음
 - 한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도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부산에 소재한 금융회사들의 육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해 타 지역 대비 경쟁력 있는 금융산업 클러스터를 형성, 상호작용을 통해 부산지역과 타지역의 금융소비자를 흡수하여 발전을 이끌게 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전략적으로 소규모 금융회사를 타겟으로 하여 금융규제 진입 강도가 크지 않은 금융회사를 부산에 유치하는 제도적 환경으로서 업무위탁을 받아 금융중심지에서 관할하는 것을 모색함으로써 국가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
- 현행 금융중심지법은 1차 조성 기반에 대한 규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해외의 금융중심지 사례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제도적 활용 방안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 현행의 금융중심지에 대하여, 기존의 금융규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규제특례에 대한 설계나 금융특구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제 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금융산업의 특성과 규모, 참가자 등에 따른 다층적 규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구법 내지 규제특례법 등의 입법으로 전환함으로써 신기술금융이나 혁신금융 등에 대한 직접적이고 과감한 특례적용이나, 지역특구법에서와 같은 특정지역별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아래에서는 금융특구법 또는 규제특례법 방식의 입법적 개선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는 각 특구법제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금융중심지 입법의 개정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산)금융중심지 및 부산지역 특구법제의 주요 내용 비교

1) (부산)금융중심지 발전 현황 및 법적 지위

- 정부는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3년부터 금융중심지 정책을 추진하였으며,²³⁾ 2007년 12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이 법에 따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4차에 걸쳐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되었고, 2020년 5월에는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0~2022)’이 수립되어 지속적으로 금융중심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²⁴⁾
 - 그러나, 현행의 금융중심지법이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최소한의 형식적 조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금융중심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기구

23) 2003년 12월,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여 7대 추진과제(① 자산운용업 육성, ② 금융시장 선진화, ③ 특화 Initiative 확보, ④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⑤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⑥ 규제·감독체계 혁신, ⑦ 경영·생활환경 개선)를 도출하여 금융허브 기반 구축을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2020.8., 1면

24)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중심지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임.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는 관련 제도개선과 홍보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지역별 특화전략 수립 및 상호협업·보완 등을 담당하여 상호간 효율적 역할분담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은 종합 금융중심지로, 부산은 해양 및 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역별 특화 전략을 추진, 시장친화적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임.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2020.8., 4면

설치, 금융회사 및 그 종사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금융중심지의 조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1293호)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음

- 해당 법안에서는 현행법의 제명을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금융중심지 중에서 국내·외 금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을 금융특구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실시하며,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금융특구청을 설치하여 금융특구 조성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제안이유를 제시한 바 있음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후술하기로 하며,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특구법 내지 특례법으로의 개정을 위하여서는 부산지역 특구법과의 정합성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적 논의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특구법 내지 특례법으로의 전환은 각각 지리적 특정성과 업역별 규제다층화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기존의 특구법이나 특례법과의 법률 정합성을 고려하되 금융중심지의 특성이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목적이 명확하게 설계되어야 함
 - 금융기관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서는 우선, 특례법으로서 금융안정성 내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와 수준의 일부 금융업역에 대한 다층적 규제완화 내지 규제특례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금융중심지의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도와 같이 특구법으로서의 고려가 종합적으로 필요함

2) (부산)금융중심지 및 부산지역 특구법 간 비교 등

- 현재 부산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금융중심지법에 따른 금융중심지/ 지역 특구법에 따른 부산 블록체인 규제특구, 경제자유구역법 및 외국교육기관법 등에 따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임
- 다만, 각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지원주체인 중앙행정기관이 각 법률별로 모두 상이하며, 금융중심지법을 금융특구법이나 특례법 방식으로 개정하려는 경우, 각 특례법이나 특구법과의 정합성을 일정 부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다음의 <표 IV-1>는 (부산)금융중심지 및 부산지역 특구법 간 주요 특징과 제주/새만금 등 기타 특정지역 기반 특구의 특징을 비교한 내용임

<표 IV-1> (부산)금융중심지 및 부산지역 특구법 간 비교

	금융중심지 (여의도/부산)	규제특구 (부산블록체인)	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	기타 특정지역 기반 특구 비교	
				제주	새만금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근거법률	금융중심지법	지역특구법	경제자유구역법, 외국교육기관법, (외국의료기관개설허가절차규칙) ²⁵⁾	제주특별법, 외국교육기관법	새만금사업법
대상산업	금융	블록체인	경제/교육/의료	경제/교육/의료	경제/교육/의료
특례원칙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불필요한 금융 관련 규제 폐지, 효율적 금융 관련 규제의 신설 억제(법 제7조)	행정기본법 제2조 제1항제11호에 따른 행정규제에 대한 완화, 적용 제외, 규제권한 이양 등	특례 우선 적용, 다른 법률에서 완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함 (법 제2조의3)	“국제자유도시”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법 제2조(정의))	특례 우선 적용, 다른 법률에서 완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함 (법 제2조의3)
규제특례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경영환경 개선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방안 보고(법 제13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특례 관련 개별법 규제 개선 요청 (법 제15조 제4항) - 규제의 신속확인 (법 제85조) - 실증특례 (법 제86조 ~ 제89조)²⁶⁾ - 임시허가 (법 제90조 ~ 제91조)²⁷⁾ -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²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폐율·용적률(법 제9조의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법 제9조의3),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법 제9조의4), 농지 전용(법 제9조의6), 조성토지 처분(법 제9조의7), - 인가·허가 의제(법 제11조) - 조세·부담금 감면(법 제15조) -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자금지원(법 제16조) - 다른 법률 적용 배제(법 제1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보호대상대상자 지원, 장애인고용촉진, 고령자고용촉진 등 의무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자유화의 추진(법 제22조)²⁹⁾ - 우선 이양 대상사무(제24조) :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보훈, 환경, 노동 -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제148조)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161조) - 제주투자진흥지구(제162조) - 공공유재산 특례(제16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허가 의제(제17조) - 부담금 감면(제44조) - 보조금 교부(제45조) - 외국인투자기업자금지원(제45조의2) - 토지건물 사용허가 특례(제46조) : 외국인투자기업 및 협력기업, 외국교육/의료기관, 연구기관/입주기업 - 체육시설 (제47조) - 민자유치사업 지원(제48조): 점용허가 등 - 특별건축구역(제49조) - 보전산지 (제50조) - 토지이동(제51조), 지역·지구 지정고시기간(제52조), 산업단지(제52조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제52조의3), 규제자유특구(제52조의4), 지역기업우대(제53조) - 농지조성(제54조) -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자금지원(제58조) 및 다른

					법률 적용 배제(제58조의2) - 산업평화 유지(제58조의3)
특구내 서비스	-	외국어서비스(법 제140조), 의견진술 및 청문(법 제141조)	- 외국어서비스(법 제20조), - 외국환거래법상 경상거래 직접 지급예외(제21조) -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법 제22조) - 외국의료기관/전용 약국(법 제23조), 의료기관 부대사업 특례(법 제23조의2)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제23조의3) - 외국방송의 재송신(법 제24조) -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 특례(법 제24조의3) - 음부즈만(법 제28조) ³⁰⁾	-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정주환경 조성(제197조~제21조) - 교육환경의 조성(제211조~제234조) -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제238조~제457조)	- 출입국관리법 특례(제58조의4) -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제59조) - 외국어 서비스(법 제60조) - 외국교육기관/의료기관(법 제61조, 제62조) - 외국인 전용 카지노(제63조) -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제65조),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제66조) - 경상거래 지급(외국환거래법상 대외지급수단 직접 지급)(제67조)
위원회(심의 및 의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심의 기능만 있음)	규제자유특구위원회(심의·의결): 위원장-국무총리(법 제77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심의·의결):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25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심의)	새만금위원회: 위원장-2명(국무총리/대통령위촉)(제33조)
위원회(사전검토 및 심의)	-	규제자유특구규제 특례등심의위원회: 위원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79조)	경제자유구역청장(법 제27조의2 제2항)	사무기구(제18조의2)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심의): 위원장-민간,호선(제11조의3)
조례 제정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IFEZ	관할 시·도 ³¹⁾	관할 시·도 (부산 X)	제주자치도	전라북도
사후관리	-	평가(제83조) 및 사후관리(제84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평가 및 사후관리(법 제28조의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청문(제46조) 및 감독(제463조): 도지사	-

- 25)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1. 22.]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26) “실증을 위한 특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6호)
- 27) “임시허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7호)
- 28) 연구개발, 특별건축구역, 전시시설, 예비타당성, 세제·부담금, 인·허가,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연계교통체계, 수도, 하수도, 경관, 개발제한, 광역교통, 산업입지, 산업단지, 출자·출연기관, 자율주행차, 위치정보보호법, 고압가스, 수소배관시설, 정보통신망보호, 통신기기제조, 의약품 제조, 의료기기 제조, 유전자변형생물체, 무인기 비행전용구역,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 태양광, 풍력, 태양에너지, 농업보호구역, 매립지, 중자기술연구단지, 마리나항만, 해양관광산업 관련 국가기정 문화재, 화장품, 살아있는 나무이용 숙박시설, 공장설립승인, 관광식당업 외국인 국내공연, 민간전기공급, 관광단지 등 특례(법 제92조 ~ 제139조)
-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를 국가발전의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옴부즈만 등)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옴부즈만을 둔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의 지부(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
- 31)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제6678호) 2022. 4. 13;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733호) 2022. 8. 5.

2.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관련 검토

가. 현행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주요 내용

-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은 금융시장의 활성화와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설치(제6조),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금융혁신의 촉진(제7조 및 제9조),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제10조),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제13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011년 9월 30일 일부개정을 통하여,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국 금융기관 등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시·도지사가 국내·외국 금융기관 등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문제점

- 지난 2009년 서울과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금융인프라 개선과 홍보로 여건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³²⁾ 평가에서 우리 금융중심지의 순위가 하락³³⁾하고 있는 등 국내 금융중심지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32) 영국계 컨설팅 회사인 Z/Yen사가 2005년부터 세계 주요 금융도시의 경쟁력지수인 Global Financial Centre Index를 매년 3월과 9월에 발표하고 있으며, 2016년 7월부터 중국개발연구원(CDI)과 공동발표하고 있음.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평가 근거는 [참고자료 1] 참조

33) 매해 3월 기준 서울/부산의 금융중심지 순위는 2014년 7위/27위에서 2016년 12위/38위, 2018년 27위/46위, 2020년 33위/51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또한, 연도별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 진입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말 166개사에서 2019년 말에는 162개사로 소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이 정체되고, 본점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한 영업 축소 움직임 등도 소개되어 왔음³⁴⁾
- 2020년 9월에는 부산의 국제금융중심지 순위가 1단계 상승하면서, 2015년 9월 이후 7년만에 20위권으로 진입함으로써 2년만에 22단계 상승하는 기록을 보이고 있음³⁵⁾
 - 아래의 <표 IV-2> 는 국제금융센터지수평가(GFCI) 주요 도시별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음

<표 IV-2> 지엔그룹 국제금융센터지수평가(GFCI)의 국제금융중심지 도시별 지수³⁶⁾

■ 국제금융중심지 상위 도시 및 부산·서울 지수 (자료 : 지엔그룹 자료 재구성)

도시(국가)	GFCI31		GFCI30		순위변동	점수변동
	순위	점수	순위	점수		
뉴욕 (미국)	1	760	1	759	-	+1
런던 (영국)	2	731	2	726	-	+5
싱가포르	3	726	6	712	↑3	+14
홍콩	4	725	3	715	↓1	+10
샌프란시스코(미국)	5	724	7	711	↑2	+13
상하이 (중국)	6	723	4	714	↓2	+9
LA (미국)	7	722	5	713	↓2	+9
베이징 (중국)	8	721	8	710	-	+11
선전 (중국)	9	720	10	707	↑1	+13
파리 (프랑스)	10	719	11	706	↑1	+13
서울 (한국)	11	718	12	705	↑1	+13
부산 (한국)	29	700	30	673	↑1	+27

출처 : 부산제일경제(<https://www.busaneconomy.com>)

- 금융중심지 순위(29위) 대비 핀테크 순위(19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블록

34) 이용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정무위원회, 2020.9. ;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2020.8., 5면

35) 홍윤 기자, “부산, 국제금융중심지 순위 1단계 상승...7년만 20위권 진입”, 부산제일경제 뉴스기사, 2020.9.25.

(<https://www.busan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88839>(2023.4.5.최종검색)

36) 최진원 편집기자, “국제금융중심지 상위 도시 및 부산·서울 지수”, [부산, 국제금융중심지 순위 1단계 상승...7년만 20위권 진입], 부산제일경제 뉴스기사, 2020.9.25.

(<https://www.busan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88839>(2023.4.5 최종검색)

체인규제자유특구나 U-스페이스BIFC 등과 같은 핀테크 산업기반이 기존 금융산업 관련 인프라에 비해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따라서, 핀테크 산업이나 블록체인 등 신기술기반 금융업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조성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기반이 종합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부산금융중심지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과제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해양·선박금융 재진출 ▲해양관광·수산 등으로 해양금융개념 확대해 해양 관련 소비자금융 육성 ▲스타트업 및 벤처 금융 마련 ▲한국해양진흥공사 건화물선 지수를 기초지수로 한 파생상품 개발 등이 제시되고 있음³⁷⁾

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국회 입법안 처리 현황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의 제명을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금융중심지 중에서 국내·외 금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을 금융특구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실시하며,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금융특구청을 설치하여 금융특구 조성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금융특구”를 금융중심지 중에서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고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금융특구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특구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신설)
-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내에 금융특구를 조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7) 홍윤 기자, “부산, 국제금융중심지 순위 1단계 상승...7년만 20위권 진입”, 부산제일경제 뉴스기사, 2020.9.25.

(<https://www.busan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88839>(2023.4.5.최종검색)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구역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금융특구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금융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신설)

- 시·도지사도 하여금 금융특구의 원활한 조성과 관리를 위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인 금융특구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금융특구청의 세입과 세출은 구분 관리함(안 제18조 및 제21조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성사업 시행자, 국내 금융기관, 외국 금융기관 및 연관산업기관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신설)
- 외국인에 대하여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는 등 생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신설)
- 외국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유치원, 외국교육기관 등을 금융특구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금융특구 내의 학교 안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신설)
- 외국인으로 하여금 금융특구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특구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신설)

2) 정무위원회 검토보고 결과

□ 금융특구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금융중심지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과 금융중심지 중에서 금융특구를 지정할 경우 우려되는 지자체간 갈등 상황 및 금융중심지와 금융특구와의 관계 정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며, 아울러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함

- “금융중심지 중에서” 금융특구를 지정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에 대하여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는 점을 지적함³⁸⁾

- 금융특구로 지정되면 개정안에 따라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

38)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금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기존 금융중심지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도 금융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임. 개정안에 대한 전라북도 의견.

는데 반하여, 금융중심지에는 그와 같은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금융특구 외에 금융중심지 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혜택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이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등 아직까지 개정내용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함

- 현행법상 금융중심지 지정·해제 등과 관련된 절차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안은 금융특구 지정 절차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은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일괄해서 규정하도록 제안함

- 한편, 금융업은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은 금융특구와 별도의 절차로 지정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하여 확인함³⁹⁾

※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금융특구 지정신청을 할 때 작성하는 조성계획에 산업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안 제14조제3항), 산업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10% 이상을 증감하는 등의 경우에 금융특구 지정절차를 준용하여 조성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16조제3항)

- 금융특구청 설치, 금융특구청장 임명·임기 및 임용권의 위임, 지방공무원 파견 및 금융특구청의 회계와 재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금융특구 도입 여부와 함께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유사한 방식을 취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별도의 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사무처리 및 임용권 등에 있어 자율성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개정안 제22조의 감면규정과 관련하여 국세 감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지방세 특례규정 신설 등 감면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개발부담금 감면은 국토교통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각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밝히면서, 각 관계 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각

39)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인천시 의견.

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각 개별법에 대한 개정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함

-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개별법에서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와의 입법체계에 배치된다는 의견을 제기함⁴⁰⁾⁴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이하 생략)

- 국토교통부에서는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감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⁴²⁾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은 「농지법」 제38조제6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감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⁴³⁾되어 있기 때문에 개

40) 기획재정부 의견: '65.12.20.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정시 각종 법률에서 분산 규정하던 조세특례 사항을 동 법에서 통합관리하도록 규정 ⇒ 조세특례 사항의 총체적인 재조정·단일화로 과세공평과 효율적 세수관리 목적

○ 개별법 차원의 세제지원 근거 규정은 비과세·감면을 통합관리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입법 취지에 배치

41) 행정안전부 의견: 개별법상 규정된 지방세 감면 규정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

- 지방세 특례규정 신설 등 감면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항임

42) 국토교통부 의견: 동 개정안에 따른 금융특구 조성사업을 감면하는 경우, 타 법령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에서도 형평성을 이유로 유사한 감면 요구가 쇄도할 수 있어 개발부담금 제도는 형해화 될 우려가 있음. 현행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자체 귀속분(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동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발부담금 감면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

43)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안 내용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⁴⁴⁾

□ 현재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이 정체되고, 본점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한 영업 축소 움직임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영·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금융특구 내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공급,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을 제시함

○ 다만, 개정안은 「주택법」, 「외국환거래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등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해당하는 법률들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 부처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고, 필요시에는 개별법에 대한 개정도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참고로 외국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한 개정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 곤란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⁴⁵⁾ 현재 금융중심지인 서울 지역에 금융특구가 조성될 경우 서울에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의료기관 등의 설립을 허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의 교육정책과 의료정책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을 밝힘⁴⁶⁾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44)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감면·환급 등은 「농지법」에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제4조와 상충되므로 삭제 필요

제4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5) 보건복지부 의견: 의료업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 업무인바, 개설권자를 의료인, 국가·지자체, 비영리법인(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제한 중이며, 외국인 금융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 마련이 입법취지라면, 상법상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인정과는 무관한 사안이며, 세계적인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수준 및 접근성, 해외 의료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이 이미 제도화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수용 곤란. 참고로 현재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에 외국의료기관 설립 근거 조항이 있으나,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은 없고,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은 '녹지병원' 개설허가가 있었으나 개설허가취소 후 녹지병원과 제주도 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

4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인천시 의견」

다. 시사점

- 금융특구청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 등에 대하여 다른 관계부처의 협력이 어려운 경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승격하고 관련 권한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구법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규제특례의 적용, 금융중심지 지역특례형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제도의 운용 등에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중앙정부로서의 심의·의결기관으로 승격되는 경우, 신기술금융이나 소규모금융회사 등에 대한 규제 다층화 설계를 통하여,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이양하는 방식의 지방분권화가 필요할 것임

-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영환경·생활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공급,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제특구에 대한 일정한 지원 제도로 패키지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다양한 규제 완화 요구가 시도되어 왔으나, 그 논의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가 많아 다른 부처 의견 수렴 및 이해관계자, 국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에서 현행 유사 특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상의 규제 완화나 지원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별법에 대한 개정도 함께 고려하여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관련 검토

가. 2018년 전부개정 법률[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52호, 2018. 10. 16., 전부개정]

1) 제안 이유

가)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채택

-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되었으며, 현행법에 의거하여 총 194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가 58개의 개별 법률에서 정한 128개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2019년 전부개정을 통하여 신기술 실증 관련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채택하고,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법률 명칭 변경

-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와 함께 지역 내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의 명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함

다) 입법 목적 확대

- 이 법은 지역특구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도입 및 관리·운영 관련 규정 구체화

-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산업을 말함(제2조제12호)
-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 시·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함(제2조제13호)
-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수도권 제외)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제72조에서 제75조까지)
-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설치함(제77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해제,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제78조)

-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제3장제2절)
-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전시산업발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제3장제3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42조)
- 취소된 실증특례를 계속 적용한 자, 임시허가가 취소된 사업활동을 계속한 자,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43조)
-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을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으로 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제특구계획이 승인되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봄(부칙 제3조)

2) 주요 내용

-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와 함께 지역 내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의 명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함
- 이 법은 지역특구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

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산업을 말함(제2조제12호)

-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 시·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함(제2조제13호)
-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수도권 제외)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제72조에서 제75조까지)
-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설치함(제77조)
-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해제,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제78조)
-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제3장제2절)
-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전시산업발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제3장제3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42조)

- 취소된 실증특례를 계속 적용한 자, 임시허가가 취소된 사업활동을 계속한 자,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43조)
-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을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으로 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제특구계획이 승인되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봄(부칙 제3조)

나. 2021년 개정 법률[시행 2021. 7. 21.] [법률 제18102호, 2021. 4. 20., 일부개정]

1) 제안 이유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여 지역발전전략의 다극화 및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육성·발전으로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음
-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 승인 후 실증특례 만료 시(2+2년)까지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사업중단 우려를 업계에서 제기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 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제 도입, 법령정비의 필요성 판단 구체화,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아울러, 신기술 및 신산업의 경우 가입가능한 책임보험상품이 없거나 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점이 있기에 공제 등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였음

2) 주요 내용

- 규제 의 판단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규제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증특례 부여 사유로 추가하여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함(제2조)
- 관계부처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정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신기술 분야 특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제2항)
-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사유에 "부득이한 사유로 실증이 지연된 경우"를 추가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함(제86조)
- 규제 샌드박스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 도입, 법령 정비의 필요성 판단 절차 구체화,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87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의 의무가입범위에 책임보험 외에 공제 등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함(제88조 등)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취소를 의무화하고, 경미한 조건 불충분에 대하여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의 취소 전에 시정명령을 통해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함(제89조 및 제91조)

다. 시사점

- 신기술금융 분야나 핀테크 분야 등의 금융업 영역에서는 그동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상의 특정지역 기반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는 사실상 적용이 어려웠음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상의 혁신금융사업자의 경우, 전국을 범위로 하는 업역별 규제샌드박스의 개념이나, 금융중심지 등에서는 신기술금융이나 소규모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다층적 규제 설계를 통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금융중심지에서의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인허가의제, 규제개선권고 등에 대한 제도들을 별도로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다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개정 논의가 있는 경우, 적시에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입법 개선을 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한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는 특례 우선 적용에 대한 규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도 이러한 우선 적용 규정을 함께 채택하여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항에서 “이 법은 금융관련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제2항에서 “이 법에 따라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제의 근거법령(해당 사항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을 따른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완화된 규제를 우선 적용하는 방식의 규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바, 향후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을 특구법 내지 특례법화 하는 개정 과정에서 우선 적용 규정을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것임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여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음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련 검토

가.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1) 주요 내용

-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법 제4조)
- 법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않음
- 제5장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제20조~제24조의3에서는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경상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직접 지급 허용,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허용,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의 개설, 의료기관 부대사업 특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외국방송의 재송신,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 협의변경 허용 등 다양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두고 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외에는 모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법 제4조 제4항, 법 제7조 제4항)
 -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할 수 있음(법 제7조의7 제2항). 단,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선정 요청 전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법 제7조의7 제1항)
-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와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를 구분하고 있으며, 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서 제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9조의6(「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14조(준공검사)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광범위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2) 발전 연혁

-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항만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의제 대상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온 바 있음
 -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인가·허가 등의 의제 대상을 추가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한 바 있음([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74호, 2019. 8. 20., 일부개정])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함([시행 2021. 9. 16.] [법률 제18268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7조의6제1항제11호 신설)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시행 2008. 6. 8.] [법률 제8667호, 2007. 12. 7., 일부개정] 법 제11조제1항제 38호부터 제40호까지 신설)
 - 경제자유구역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자 지정 및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무에 대하여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면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온 바 있음
 - 일정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시·도지사 및 협의회와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시행 2017. 6. 3.] [법률 제14307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25조제2항에 제6호의2 신설, 제27조제2항 신설)
 - 경제자유구역 내 단지 등(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항만배후단지 등)과 관련한 계획이 수립·변경되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 불일치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개발사업자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며,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현행 업무 중 하수도 및 옥외광고물 등 도시관리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함([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24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7조의6 신설, 제8조의3 개정, 제27조 개정, 제28조의4 신설)
 -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및 인·허가 등의 의제 확대([시행 2005. 4. 28.] [법률 제7349호, 2005. 1. 27., 일부개정] 법 제8조제5호 및 제11조제1항 개정)

-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 및 외국인 체류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편리화를 위한 제도들을 채택해 온 바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시행 2011. 8. 5.] [법률 제 10529호, 2011. 4. 4., 일부개정] 제22조제6항, 안 제22조제10항 신설)
-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지식경제부장관(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시행 2011. 8. 5.] [법률 제10529호, 2011. 4. 4., 일부개정] 제24조의3 신설)
-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시행 2009. 7. 31.] [법률 제9366호, 2009. 1. 30., 일부개정] 법 제24조의2 신설) 적용
 -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안 총주택공급세대 수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용지를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선정방식,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우선 분양전환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 대한 특례를 둬
-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및 부대사업의 특례 인정([시행 2008. 6. 8.] [법률 제 8667호, 2007. 12. 7., 일부개정] 법 제23조제1항, 법 제23조의2 신설)
 -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되어 의료분야의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고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등에 대하여는 「의료법」에 불구하고 보양온천의 설치·운영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내국인 대상 의료업 허용([시행 2005. 4. 28.] [법률 제7349호, 2005. 1. 27., 일부개정] 법 제23조 개정)

나. 현행 법제의 문제점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의 국회 제출 현황

1) 제안 이유

- 그동안 인·허가 간소화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업무 수행 권한 부여 등 다양한 방면의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집권적 행정문화가 강하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격한 출생률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함으로써 진정한 지역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권한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노력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을 막는 악순환을 일으킨다고 판단하는 관점으로 지역분권의 실행을 위한 중앙권한의 지역 이전이 필요하다고 함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3.3.6.)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3.3.6.) 제안이유

2) 주요 내용

-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분권을 앞당기고자 함(「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조제1항제2호, 「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제1항제2호나
 목, 제12조, 제24조제3항))

다. 시사점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지위를 격상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 대한 권한의 위임이나 이양을 통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고, 시·도지사는 금융특구청의 설치를 통하여 금융특구의 원활한 조성과 관리를 위한 사무와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함
 - 금융중심지의 효과적인 조성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금융중심지 내의 기초시설 등 인프라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함.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면밀한 협의를 통하여 개발계획과 인·허가의제 등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관할 시·도지사에 대한 일정한 권한의 위임이 필요함
- 금융중심지에 대한 관할 시·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특구 관할 시·도지사에 대한 권한 이양 방식과 특정지역형 규제특례 방식 2가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특정지역형 규제특례 방식 : 현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상의 특화특구 또는 규제자유특구와 유사하게 금융중심지 지역 및 개발계획 등에 대해서 관련 규제를 완화 또는 면제하는 방식으로 각 규정 설계
 - 특구 시·도지사에 대한 권한 이양 방식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과 유사하게 금융중심지 지역 및 주변 인프라와 관련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중앙정부의 권한을 위임하도록 법률에서 정하여 중앙정부의 광범위한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는 방식으로 각 규정 설계
 - 즉, 특정지역형 규제특례 방식에서는 규제특례의 신청, 규제특례계획의 수립, 규제특례 부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한 권한 이양에 관하여서는 보칙에 정함으로써 금융특구에서의 규제특례에 대한 시·도지사의 지위를 강화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도 이양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음

- 또한, 정주여건 개선 및 체류조건 완화 등 금융중심지 내지 금융특구에 대한 다양한 내·외국인 거주 지원 정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5. 소 결

- 금융중심지에 대한 금융특구 지정·운영을 통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 특정지역형 규제특례 및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샌드박스형 지원 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입법 목적 및 적용범위 확대가 필요함
- 입법 목적 및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금융중심지법이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고, 규제특례법으로서 이 법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규제특례법의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최대 특례를 인정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완화된 규제를 우선 적용하는 방식의 규정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내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모두 채택하고 있는 바, 향후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의 특구법/특례법 개정 과정에서도 동일 규정을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서도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한 “특례 규정의 제·개정 논의와 규제의 개선”을 포함하도록 하여 입법 목적 및 적용범위 확대 및 특례법으로서의 지위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함
-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특례의 적용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심의·의결과 경영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관련 규정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위 승격이 필요할 것임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중앙정부로서의 심의·의결기관으로 승격되는 경우, 신기술금융이나 소규모금융회사 등에 대한 규제 다층화 설계를 통하여,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이양하는 방식의 지방분권화가 필요할 것임
 -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관할 시·도의 행정력 강화를 위하여 금융특구청을

설치함으로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과 금융특구 운영을 위한 다양한 특례 규정의 적용과 실행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의 혁신금융사업자의 경우, 전국을 범위로 하는 업역별 규제샌드박스의 개념이나, 금융중심지 등에서는 신기술금융이나 소규모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다층적 규제 설계를 통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에서의 신속확인 및 규제특례의 신청과 부여, 규제개선권고 등에 대한 제도들을 추가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영·생활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공급,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제특구에 대한 일정한 지원 제도로 패키지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을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가칭)」으로 개정하여,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지위 격상과 함께 소규모 금융회사 등록과 관련한 스폰라이센스 인정과 이에 대한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채택하고, 이에 대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권한이양 절차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할 것임
 - 부산광역시시장에게 관련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함
- 금융중심지 시·도지사가 금융특구의 신청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특구에 대한 특수한 지위를 설정하고, 해당 금융특구에 각 지역별 금융중심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특구에서의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장기적으로 금융중심지의 균형있는 발전에 부합할 것임
 - 금융중심지 시·도지사가 금융특구의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중심지 육성 및 금융업 발전을 위한 특례 규정의 설정과 특구 운영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확보된다 할 것임

- 금융특구의 지정을 통하여 다수의 특례규정이 해당 금융특구에 적용되는 강력한 법적 지위를 얻게 되므로, 금융특구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은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의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지정에 관한 규정은 금융특구의 지정에 대한 선행절차로서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되므로 법률에 규정하도록 상향 입법이 필요함

□ 위에서 정리한 주요 쟁점과 금융중심지 관련 특례 법제 체계화 방안을 기초로 하여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 조성발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개정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을 것임

현 행	개 정 안
<p><u>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법률</u></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조(목적) 이 법은 <u>금융중심지</u>의 조성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u>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 조성발전에 관한 법률</u></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u>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u>-----</p> <p>-----</p> <p>-----</p> <p>-----</p> <p>-----</p> <p>제2조(정의) -----</p> <p>-----</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u>금융특구</u>”란 <u>금융중심지</u> 중에서 <u>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유치</u>를 촉진하고 <u>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u></p>

2.·3. (생략)

제3조(국가의 기본책무) ① 국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촉

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으로 제14조에 따라 지정한 곳을 말한다.

2.·3.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의 기본책무) ①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②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금융관련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제의 근거법령(해당 사항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을 따른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
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외국환, 그 밖의 금융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금융시장의 지원·육성
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금융 관련 규제 및 금융감독체제의
개선
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6.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의 개선
7. ~ 11. (생략)
12.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
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⑥ (생략)

-----.

② -----
-----.

1.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2.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외국환, 그 밖의 금융
관련 제도 및 특례 규정의 제·개정
논의와 규제의 개선
3.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4.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5.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6.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7. ~ 11. (현행과 같음)
12.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략)
2. 금융중심지의 구성과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3. 금융중심지의 구성과 발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4. 금융중심지의 구성과 발전에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5. (생략)

<신설>

<신설>

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① -----

-----심의·의결-----

1. (현행과 같음)
2.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3.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4.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5. (현행과 같음)
6. 제1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융특구 조성계획의 확정 및 금융특구의 지정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금융업자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

시행령 개정안
제○조(소규모 금융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금융업자”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 제117조의4(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제182조(집합투자기구), 제182조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제247조의 3(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제263조(채권평가회사),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 제365조(명의개서대행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4.

② 제1항 각호의 소규모 금융업자의 경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심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 각 소규모 금융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및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금융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및 조율 필요 사항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 금융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및 제45조에 따른 용자한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5조에서는 총리령으로 용자한도를 정하고 있는 바, 금융중심지법에서 특례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필요할 것임

3. 제1항 제3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 진입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영업요건 등은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범위로서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므로 별

<신 설>

<신 설>

6.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금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금융 유관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도의 특례를 설정하기 어려울 수 있음
4.

8. 제25조제2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승인

9. 제28조제3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10.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금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금융 유관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같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 장관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3. 법무부 장관 4. 교육부 장관 5. 보건복지부 장관 6. 고용노동부 장관 7. 국토교통부 장관 8.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설>

- ④ 제3항 각 호의 위원은 각각 10인 이내로 한다.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 9. 해양수산부 장관
- 10.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11.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금융중심지 또는 금융특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위원을 1명 두며, 간사위원은 금융위원회위원장이 된다.
- ⑤ 제3항 각 호의 위원은 각각 20인 이내로 한다.
- ⑥ 현행 제5항과 동일
- ⑦ 현행 제6항과 동일

제2장 금융중심지

제5조의2(금융중심지의 지정 등) ①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기업, 관계 전문가 및 지방의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

제12조의2(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①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신 설>

<신 설>

다)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	
제4조(금융중심지의 지정 등)	<삭제>

제12조의2(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① -----

-----이하-----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장 금융특구

제14조(금융특구의 지정) 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금융위원회에 금융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특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금융특구 지정의 필요성
3. 조성사업의 시행예정자
4. 조성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5. 재원조달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7.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 유치 계획
8.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9. 그 밖에 금융특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에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 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금융특구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 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특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금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금융특구를 지정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금융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금융특구의 지정요건) 금융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충분한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유치 가능할 것
3. 외국인 정주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4. 금융특구 조성에 경제성이 있을 것
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6.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신 설>

제16조(조성계획의 변경) ① 금융위원회는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조성사업의 시행자(이하 “조성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조성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각각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만 준용한다.

1.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거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
2.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거나 경제자유구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금융특구의 지정 해제) ① 금융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금융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신 설>

는 경우에는 금융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조성사업시행자의 사업참여 기회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금융특구를 조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지역·지구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금융특구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3. 외국인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금융특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특구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8조(금융특구의 행정기구) ① 시·도지사는 금융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무 및 제31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이 경우 금융특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금융특구청”이라 한다)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특구가 둘 이상의

<신 설>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③ 금융특구청의 장(이하 “금융특구청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특구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상호 간에 지방세 및 수수료·사용료의 부과·징수, 민원서류의 발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금융특구청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⑥ 금융특구청에는 「지방자치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정원을 들 수 있다.

<신 설>

제19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특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금융특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금융특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특구청에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8조·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금융특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금융특구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20조(공무원 파견기간) 금융특구청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금융특구청의 회계와 재정)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특구청의 세입과 세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2. 시·도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 설치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서 시·도의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시·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의 재산으로 유상 이관할 수 있다.

제22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특구 조성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사업시행자, 국내 금융기관, 외국 금융기관 및 연관산업기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특구 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7.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

<신 설>

<신 설>

<신 설>

면 점용료·사용료

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10.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23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금융특구에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을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24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융특구의 입주 외국 금융기관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금융특

<신 설>

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금융특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② 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⑤ 국가는 국민이 금융특구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특구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⑦ 금융특구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4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⑧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① 외국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특구 내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안에 외국대학 교육과정(외국대학이 설치·운영하는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28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금융특구에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 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금융특구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1. 금융특구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외국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금융특구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금융특구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신 설>

제30조(외국방송의 재송신) 금융특구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 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금융특구에서 혁신금융서비스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혁신사업 또는 전

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에 관한 의견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관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관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경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회신 받은 의견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상충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종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보완 요구기간에 대해서는 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조(규제특례의 신청) ① 금융특구의 조성과 발전을 위해 규제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이하 ‘규제특례’라 한다.)을 받으려는 금융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규제특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

<신 설>

례 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규제특례계획의 수립) ① 금융특구 관할 시·도지사가 규제특례를 신청하거나 기존의 특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공간적 범위
2.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3. 규제특례 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 방안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의 시·도 발전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특구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규제특례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기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제○조(규제특례 부여등) ①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금융특구 관할 시·도지사가 신청한 규제특례에 대해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면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특구 관할 시·도는 부여받은 규제특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조(규제 개선의 요청) ① 금융특구에서 혁신금융서비스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규제의 개선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심의를 통하여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등이 입증되어 금융관련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금융관련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관련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④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또는 관련 행

정기관의 장은 금융관련법령의 정비에 착수하였으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융관련법령의 정비를 중단할 수 있다.

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정비의 착수 여부와 제4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정비의 중단 사실을 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요청한 자가 금융관련법령의 정비에 착수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의2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요청한 자”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 개선의 요청과 금융관련법령 정비 등의 구체적인 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보칙

제○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신 설>

<신 설>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특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조(권한 이양의 신청) ① 금융중심지 또는 금융특구의 조성·발전을 위해 금융중심지 또는 금융특구의 관할 시·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이양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지역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심의하고 권한이양의 범위 등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한이양을 승인받은 시·도는 이양받을 사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이양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이양계획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제5장 벌칙

제○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외국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2. 제29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의료법」 제2조에서 허용된 의료인 중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3.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약사

제○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제○조(벌칙)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조(과태료) 제30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에 관한 경과 조치) 종전의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지역에 대하여서는 제5조의2(금융중심지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한 금융중심지로 본다.

V. 결론

V. 결론

- 부산금융중심지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 첫째, 금융중심지 정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상이 제고되어야 하고, 나아가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관할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되어야 함
 - 둘째, 금융중심지에 소규모 금융회사가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되어야 함
 - 셋째,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함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상이 제고되어야 하고, 나아가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 관할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되도록 하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중심지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는 금융중심지법의 개정이 필요함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정부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금융중심지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함
 -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에 대한 관할 시·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도록 “특별지역지정모델”에 기한 금융중심지법의 개정이 필요함

제00조(권한 이양의 신청)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해 금융중심지 관할 시·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이양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지역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심의하여 권한이양의 범위 등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한이양을 승인받은 시·도는 이양받을 사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이양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이양계획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금융중심지에 소규모 금융회사가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되어야 함
 -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과 같이 등록제로 운영되는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진입규제권한 중 등록업무를 부산금융중심지에 위탁하는 제도를 입법정책

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아가 입법정책적인 관점에서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업무도 부산금융중심지에 위탁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 이유로는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진입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점, 스톨라이센스가 활발하게 인정될 경우 설립건수는 많은데 비해 검사·감독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점, 검사·감독의 효율·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율규제기관을 활용하는 점에서 규제 진입 시에도 위탁을 통해 효율·효과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생각할 수 있음

-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부산광역시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포함) 간에 핀테크 브릿지(fintech bridge)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즉 부산을 거점으로 한 금융업자의 경우 중앙에서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때, 부산금융중심지에도 그 정보가 제공되어 부산광역시가 지원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법의 제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심사의 경우에도 중앙 관련 감독기관이 처음부터 참여하여 충분한 인식이 상호 교감될 필요가 있음

□ 가칭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함으로써 부산금융중심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법의 제정을 통해 “부산금융특구청”을 설치하고, 소규모 금융회사의 등록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산금융중심지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됨

- 그런데 현행의 금융중심지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최소한의 형식적 조항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중심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기구 설치, 금융회사 및 그 종사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금융중심지의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가칭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지위 격상과 함께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스톨라이센스 인정과 이에 대한 자본시장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채택하는 한편, 이에 대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산광역시장에 위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약칭: 지방일괄 이양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함

참고문헌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싱가포르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발간(보도자료), (2022.06)
-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 (2020.08)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싱가포르 금융감독업, (2022)
- 국회재정경제위원회,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2006.11)
- 안수현·정대·이지은·노은영·강영기, 신민사소송법, 디지털금융시대 금융법 현대화: 해외사례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22.11)
- 연합인포맥스, '등록하세월' 급증하는 투자자문사.. 당국 "요건 안되면 퇴출도 쉬어", (2021.11)
- 이민호,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발전방향과 공공기관의 역할, 공공경제 2021, Vol. 08, (2021)
- 이용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정무위원회, (2020.09)
- 이진수, 대만·싱가포르의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제도 분석 및 시사점, 이슈페이퍼 20-19-①-2, 한국법제연구원, (2019)
- 전형진·윤희성·윤재웅, '국내외 해운금융 비교를 통한 국내 해운금융 역량강화 방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12)
- 최승필, 동북아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금융규제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제1권제1호, (2008)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금융관련 행정의 국제화 방안", (2007.12)
- 한국금융연구원,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2030(연구용역보고서)', (2018.12)
- 한국금융학회,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바람직한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 수립 및 부산형 발전 모델 구축(용역보고서)', (2021.10)

한국은행,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가능성, 국제경제리뷰, 제2021-16호, (2021.08)

한정미·안수현, 싱가포르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비교법제 연구 12-20-⑤, 한국법제연구원, (2012)

Daejin Kim, Global Ship Finance Market Trend, KDB Future Strategy Research Institute, (2022.11)

Kotra, 싱가포르 핀테크 규제 및 진출가이드, Global Market Report 19-105 (2019.02)